



KFA
Korea Football
Association

2026 K3.K4리그 대회운영규정

Play ON



목 차

제1장 클럽

- 제1조 클럽의 정의
- 제2조 클럽의 정치적 중립성
- 제3조 클럽의 권리
- 제4조 클럽의 의무
- 제5조 클럽의 가입
- 제6조 클럽의 자격 갱신
- 제7조 클럽의 자격 상실
- 제8조 클럽의 권한 양도
- 제9조 K3.K4리그 참가클럽
- 제10조 승격과 강등
- 제11조 가입비 및 연회비
- 제12조 탈퇴
- 제13조 연고지
- 제14조 분쟁의 해결

제2장 등록 및 참가신청

- 제15조 선수 등록 및 참가신청
- 제16조 스태프, 사무국 등록 및 참가신청

제3장 경기

- 제17조 공식경기의 주최 및 주관
- 제18조 경기 규칙
- 제19조 리그 방식
- 제20조 사용구



- 제21조 시상
- 제22조 경기출전 및 자격
- 제23조 뇌진탕 교체
- 제24조 안전
- 제25조 경기 일정
- 제26조 경기일시 또는 개최지 변경
- 제27조 경기시간 준수
- 제28조 몰수
- 제29조 실격
- 제30조 선수, 임원 및 팀에 대한 제재
- 제31조 제소
- 제32조 경기중지 결정
- 제33조 재경기
- 제34조 귀책사유가 있는 클럽의 비용 보상
- 제35조 도핑

제4장 장비

- 제36조 유니폼 등록 및 변경 승인
- 제37조 유니폼 색상 및 문자 표기
- 제38조 착용 의무
- 제39조 선수 이름, 배번 및 마크
- 제40조 협회 패치 및 클럽 광고
- 제41조 상호, 선수, 연고지명 표시
- 제42조 기념 유니폼
- 제43조 전자장비

제5장 AD카드 운영

- 제44조 AD카드



제6장 징계

제45조 목적

제46조 적용범위

제47조 설치 및 구성

제48조 공정소위원회 운영

부칙

별첨 1 유형별 긴급제재 기준표



제1장 클럽

제1조 클럽의 정의

K3, K4클럽(이하 “클럽”)은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의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본 리그에 참가하는 클럽으로 한다.

제2조 클럽의 정치적 중립성

- ① 클럽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 정치인, 정치 세력 또는 정치적 이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② 클럽은 클럽의 명의, 휘장(엠블럼), 시설물 등을 사용하거나 클럽 관계자(구단주, 지도자, 선수, 임직원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거나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③ 클럽은 경기, 훈련, 공식 행사 등 클럽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활동 영역에서 정치적 목적의 발언 또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표현하는 게시물을 게시 또는 노출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협회의 '경기장 내 선거운동 및 게시물 관련 지침'을 준수한다.
- ④ 클럽은 소속 구성원클럽 관계자 및 관중이 본 조를 준수하도록 예방 교육 및 현장 관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반하거나 관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 구단주, 지도자, 선수 등 협회에 등록된 사람은 협회 공정위원회에 회부
나. 기타 클럽 임직원 등은 자체 인사위원회 등에 회부한 후 그 결과를 협회에 보고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클럽 및 관련자를 징계한다.
- ⑤ 클럽은 지지체 등 제3자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협회는 보고된 사안에 대해 해당 클럽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조 클럽의 권리

1. 클럽은 아래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① 협회 가맹단체로서의 지위
 - ② 협회가 주최, 주관 또는 승인하는 대회 및 사업에 참가
 - ③ 협회가 부여한 마케팅 및 사업 권리
 - ④ 기타 협회 정관 및 규정에 따른 권리



제4조 클럽의 의무

1. 클럽은 아래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① 경기규칙을 포함하여 협회, AFC, FIFA의 정관, 제반 규정 및 기타 지시사항 준수
 - ② 협회 주최 또는 주관의 각종 행사 및 교육 참가
 - ③ 국내외 대회 참가 또는 개최에 대한 협회 사전 승인
 - ④ 사업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예·결산 등 협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 ⑤ 법인단체의 경우, 주주 및 임원 등 주요 변동 사항 보고
 - ⑥ 각종 회비 및 부담금 납부
 - ⑦ 분쟁 발생 시 협회, AFC, FIFA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분쟁은 외부의 법적인 절차가 아닌 축구 구성원 내부적으로 해결하도록 협조

제5조 클럽의 가입

1. 신규로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클럽은 K4리그로 가입 된다.
2. 클럽 가입에 관한 사항은 K3.K4리그 클럽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협회가 지정한 절차에 따르며, 협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사한다.
 - ① 클럽의 경영상태, 중장기 클럽운영계획, 재정보호계획, 사무국 구성계획, 유소년 운영계획
 - ② 지역과의 협력 관계 및 홈 경기장, 연습구장 등에 관한 조사
 - ③ 클럽 담당자 및 연고지 지자체 책임자 면담 조사
 - ④ 기타 가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3. 제2항에 따라 리그에 가입이 승인된 클럽은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협회는 신규 가입 클럽의 지역적 특성(서울, 수도권 등)을 고려하여 클럽라이선스 적용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6조 클럽의 자격 갱신

클럽은 K3.K4리그 클럽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자격을 갱신하여야 하며, 참가 법인, 팀 명, 팀 해체 등 주요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할 시/도 축구협회를 경유하여 협회에 사전 승인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클럽의 자격 상실

1. 제3조 ‘클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클럽 자격이 상실된다.



2. 제1항 이외에도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클럽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 ① K3.K4 클럽라이선스 규정에 의거 리그 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② 구단 의사에 따라 자진 탈퇴를 신청하거나 리그에 불참할 경우
- ③ 단체가 해산되거나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④ 이 외 지속적인 리그 참가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협회가 판단한 경우

제8조 클럽 권한의 양도

1. 클럽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클럽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한을 타 단체에 양도할 수 있다.

- ① 클럽이 타 단체에 인수되거나 합병된 경우
- ② 클럽이 타 단체에 매각된 경우

2. 클럽의 권한 양도는 클럽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클럽자격심의위원회는 클럽의 권한 양도에 따른 이행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 K3.K4리그 참가클럽

1. 2026년 K3리그에 참가하는 클럽(이하 ‘K3클럽’)은 14개 클럽, K4리그에 참가하는 클럽(이하 ‘K4클럽’)은 13개 클럽이며, 추후 클럽 수 감소에 따른 세부적인 참가 클럽 수의 조정과 결정은 협회 결정에 의한다.

- ① K3클럽(14개팀) : FC강릉, 경주한수원FC, 대전코레일FC, FC목포, 부산교통공사축구단, 시흥시민축구단, 양평FC, 여주FC, 울산시민축구단, 전북현대모터스N, 창원FC, 춘천시민축구단, 포천시민축구단, 당진시민축구단
- ② K4클럽(13개팀) : 거제시민축구단, 기장군민축구단, 남양주시민축구단, 서울중랑축구단, 세종SA축구단, 진주시민축구단, 평창유나이티드, 평택시티즌FC, 금산인삼FC, 서산FC, 제천시민축구단, 진천HRFC, 함안군민축구단

제10조 승격과 강등

1. K3, K4리그 클럽의 승격과 강등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 ① K4리그 소속 클럽 중 K3리그 승격을 희망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은 클럽이 있는 경우에만 리그간 승강제도를 운영한다.



② K3리그 참가팀 수가 16팀 미만일 경우와 16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따라 승강 방식을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구분	승격 희망 클럽 수 (K4)	K4리그 성적	승강 방식
K3리그 16팀 미만	1팀 이상	K4리그 우승	자동 승격
		K4리그 준우승	승강결정전 K4리그 준우승 vs. K3리그 최하위
K3리그 16팀 충족	1팀	K4리그 우승	자동 승강 K3 최하위 강등 ↔ K4리그 우승 승격
		K4리그 준우승	승강결정전 K4리그 준우승 vs. K3리그 최하위
	2팀 이상	K4리그 우승	자동 승강 K3 최하위(강등) ↔ K4리그 우승(승격)
		K4리그 준우승	승강결정전 K4리그 준우승 vs. K3리그 15위

- 제1항에 따라 K3리그 승격을 희망하는 클럽은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지자체 동의서 또는 재정지원 확인서 등을 포함한 승격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승격 가능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승격의향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클럽이 이를 반복하여 승격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클럽은 클럽자격심의위원회 또는 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되며 승점 감점, 홈경기 개최 금지, 보충역 선수 등록 금지, 리그 참가 자격 정지 또는 박탈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 당해 연도 6월 30일까지 승격의향서를 제출한 클럽이 없거나, 승격의향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클럽의 K4리그 최종 성적이 2위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에는 양 리그간 승강을 실시하지 않는다.
- 제1항 ~ 제3항에도 불구하고, K3·K4리그 참가 클럽 수의 증감(K리그2 패스트트랙 가입, 팀 해체, 리그 참가 자격 정지, 박탈 및 탈퇴 등)에 따른 리그 승강 클럽 수의 조정은 협회가 최종 결정할 수 있다.
- K리그2 · K3리그간 승강제도와 이에 따른 프로“B팀”의 승강 규정은 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별도로 정한 승강 규정을 따른다.

제11조 가입비 및 연회비

1. 클럽은 협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연회비

가. K3리그 : 4천만원

나. K4리그 : 3천만원



② 가입비

가. 리그 신규참가팀 : 5천만원

2. 가입이 승인된 신규클럽이 협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가입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입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3. 기존 클럽이 협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종 미납 시에는 리그 참가가 취소된다.
4. 클럽이 납부한 가입비, 연회비, 기타 각종 납입금 등은 탈퇴, 제명, 자격상실, 대회 불참 등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5. 클럽이 납부한 가입비는 K3.K4리그 적립 계좌에 별도 관리하며, 리그운영비 및 리그 발전 사업(구단 행정직원 교육, 연수 등)을 위해 협회가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 탈퇴 및 리그의 재가입

1. 클럽이 리그 탈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탈퇴 전년도 9월 마지막 업무일까지 탈퇴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클럽의 탈퇴는 클럽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클럽자격심의위원회에서 탈퇴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과할 경우 해당 클럽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3. 클럽은 리그 진행 중에 탈퇴할 수 없으며, 상기 ①항의 절차를 위반하여 탈퇴하는 경우 클럽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클럽이 보유한 선수의 양도 등 클럽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협회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4. 협회는 탈퇴 또는 협회의 결정에 따라 리그 참가 자격이 박탈된 클럽에 대하여 소속 선수들의 원활한 이적을 위하여 탈퇴 승인일(또는 자격 박탈 통보일)부터 통합 온라인시스템(joinkfa.com)에서 해당 클럽의 해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5. 탈퇴 또는 협회의 결정에 따라 리그 참가 자격이 박탈된 클럽은 탈퇴 승인일(또는 자격 박탈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리그에 재가입이 불가하며, 이후 리그 재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 클럽 가입 기준을 충족하고 신규 클럽과 동일한 승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6. 협회는 제5항에 따른 심사 결과에 따라 리그 재가입 신청을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7. 구단이 운영상의 사유로 리그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 협회는 해당 클럽의 리그 재참가 가능성을 심의하여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리그에 재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클럽은 신규 클럽으로 간주하여 신규 클럽과 동일한 승인 절차를 거쳐 리그에 참가할 수 있다.



제13조 연고지

1. 연고지는 클럽이 K3K4 클럽라이선스 절차에 따라 지정한 지역으로 클럽자격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결정한다.
2. 연고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된 연고지로 리그에 참가하고자 하는 시즌의 전년도 9월 마지막 업무일 까지 서면으로 협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클럽자격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단, 시즌 도중에는 연고지 변경이 불가하다.
3. 연고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클럽은 신규 클럽 가입과 동일한 승인 절차(서류제출 등)를 거쳐 클럽자격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동일 연고지 내에서 추가 창단을 희망하는 경우 클럽자격심의위원회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고유단체를 법인으로 하는 클럽은 원칙적으로 연고지 이전이 불가하다.
6.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팀은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보조연고지를 둘 수 있다. 보조 연고지는 주 연고지가 속한 지자체의 광역시/도 내에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회는 거리 및 기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접한 광역시/도 내의 지역도 승인할 수 있다. 단, 기존 K3,K4리그 참가팀이 연고지로 지정한 지역은 보조 연고지로 지정할 수 없다.
7. 리그 참가팀은 보조 연고지에서 최대 30%의 리그 홈경기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홈경기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1. 클럽과 소속 선수 또는 임직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계약에 의거하여 일반 법원 등에 제소할 수 있으며, 협회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존중한다.
3. 협회는 제2항에 따른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구단의 귀책사유가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구단을 공정소위원회에 또는 클럽자격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장 등록 및 참가신청

제15조 등록 및 참가신청

1. 선수 및 참가팀은 대한축구협회 등록규정에 따라, 통합 온라인시스템(www.joinkfa.com)을 통해 등록 및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등록기간은 정기 등록 기간과 추가등록 기간으로 구분한다.
 - ① 정기등록 기간은 1월부터 3월 중 최소 8주 이상, 최대 12주 이내로 한다
 - ② 추가등록 기간은 6월부터 8월 중 최소 4주 이상, 최대 8주 이내로 한다.
 - ③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협회 휴무일은 제외하며, 정기 등록 기간과 추가 등록 기간의 합은 16주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등록 및 참가 신청 기간은 협회가 지정하여 별도 안내한다.
3. 클럽은 선수 최소 20명, 최대 50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4. 선수의 배번은 1번부터 99번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 기간 종료 후 배번 변경은 불가하다. 단, 선수 이적 등으로 결번이 발생한 경우 추가등록 선수에 한하여 해당 결번 배번을 사용할 수 있다.
5. 선수는 반드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자는 K3.K4리그 선수로 등록을 할 수 없다.
6. 이적 선수는 등록기간 내에 이적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등록 및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7. 외국 국적 선수는 대한축구협회 등록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등록 및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클럽당 외국국적 선수는 최대 4명까지 등록 및 참가신청 할 수 있다.
8. 보충역 선수 등록 및 참가신청
 - ① K3리그 클럽은 보충역 선수를 등록할 수 없다
 - ② K4리그 클럽은 팀당 보충역 선수를 12명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이 중 사회복무요원은 최대 10명으로 제한한다. 단, 상근예비역(현역 군복무) 선수는 등록할 수 없다.
 - ③ 보충역 선수의 등록 인원 및 경기 출전 제한 인원은 아래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연도별 보충역 선수 등록 수는 협회의 결정에 따른다.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등록선수	12명	7명	5명
출전제한(엔트리)	5명	3명	3명

- ④ 보충역 선수는 정기 또는 추가 등록 기간 내 등록 및 참가신청 할 수 있으며, 소속된 복무기관장이 발급한 겸직허가 승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 및 추가 등록 기간 내에 등록된 선수에 한하여 5월과 9월 협회 업무일 기준 최초 5일간 겸직허가 승인서를 제출하고 협회의 승인을 득한 후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보충역 선수는 복무 종료 시까지 타 구단으로 이적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소속 클럽이 K3리그로 승격한 경우, 승격 차기연도 등록 기간에 한하여 K4리그 클럽으로 이적할 수 있다.

나. 소속 클럽이 해체된 경우, K4리그 클럽에 한하여 이적할 수 있다.

⑥ 제5호에도 불구하고, 보충역 선수는 이적 등록일 기준으로 잔여 복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이적이 가능하다

⑦ 보충역 선수에 대한 관리책임은 소속 클럽에 있으며, 병역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협회는 즉시 해당 클럽에 대한 보충역 선수의 참가신청 취소 및 참가신청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공정소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⑧ 클럽 소속 보충역 선수가 탈퇴한 경우, 전역 또는 소집 해제 시까지 해당 리그에 재등록 및 참가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해당 클럽의 당해연도 보충역 선수 등록 인원수는 변동되지 않는다.

9. 군 전역(소집해제) 선수 추가 등록

① 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된 선수는 전역일 또는 소집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및 참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을 완료한 다음 날부터 리그에 참가할 수 있다.

10. 클럽과 선수 간의 계약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대가성 조건을 전제로 선수 등록 또는 참가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6조 스태프, 사무국 등록 및 참가신청

1. 스태프 및 사무국 구분

코칭스태프	팀 지원 스태프	사무국
지도자, 코치, 피지컬코치 플레이코치	팀매니저, 의무트레이너, 팀닥터, 통역 등	클럽임원, 행정직원

2. 코칭스태프, 팀 지원 스태프 및 사무국은 본 규정 15조 2항(등록 기간)과 상관없이 등록 및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등록 시 관련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참가 클럽의 사무국 구성원은 코칭스태프, 의무트레이너 및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4. 코칭스태프 등록 및 참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코칭스태프(피지컬코치 제외)는 AFC A급 이상의 지도자 자격증 보유자 1명과 AFC B급 이상 지도자 1명 또는 AFC GK B급 이상 지도자 1명을 반드시 등록 및 참가신청 하여야 한다.

② 구단의 사정으로 감독직이 공석이 된 경우, 해당 구단은 계약해지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구단 소속 코치 중 1항의 지도자 자격을 갖춘 자(플레이코치 제외)를 ‘감독 대행’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한 내에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된다.



- ③ 피지컬코치는 AFC 피트니스 Level 1 이상의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에 한하여 등록 및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본 조항은 2027년부터 적용한다.
- ④ 플레이코치는 팀당 최대 1명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협회의 승인을 득한 후 등록 및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감독은 겸할 수 없으며, 코치에 한하여 겸임 가능
2. AFC B급 또는 AFC GK C급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
3. 해당 플레이코치 외 지도자 2명 이상 등록(예. 감독1인 + 플레이코치1인 체제 불가)
4. 플레이코치는 경기 중 유니폼을 착용한 상태로 벤치에서 지도 불가

- 5. 클럽은 반드시 1명 이상 의무트레이너를 등록하여야 하며, 최대 5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의무트레이너의 등록 및 참가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의무 · 트레이너는 물리치료사(보건복지부), 건강운동관리사(문화체육관광부), 선수트레이너(사단법인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또는 사단법인 한국선수트레이너협회), 운동처방사(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 중 1개의 면허 또는 자격을 반드시 소지한 자여야 한다.
 - ② 의무트레이너는 선수단 교육을 비롯하여 협회 및 협회 의무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의무트레이너는 소속 클럽의 모든 경기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제3장 경기

제17조 공식경기의 주최 및 주관

1. 공식경기는 협회가 주최하고, 홈 클럽이 주관한다. 홈 클럽은 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 주관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공식경기는 협회가 승인한 홈경기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홈 경기장 외의 경기장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기 개최 시 마다 사전에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벤트성 경기로 개최되는 경기(올스타전, 자선경기 등)의 개최 경기장 선정, 주최 및 주관 권리는 모두 협회에 있다.
4. 홈경기 운영이 미흡하거나 대회운영규정을 위반하여 홈경기를 운영한 경우 공정소위원회 및 클럽자격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며, 그 결과 홈경기 개최권을 3회 이상 박탈당한 경우에는 차년도 대회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5. 경기 운영을 위한 살수(Watering)에 관한 권한은 홈 클럽에 있다. 다만, 홈 클럽은 아래의 지정된 시간대에 한하여 살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기 시작 90분 전까지 살수 계획을 경기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기감독관은 해당 살수 계획을 당일 원정 클럽 및 심판진에 고지하여야 한다.

구분	시간대	살수 시간	비고
선택	~킥오프 90분 이전	-	
필수	킥오프 60분 전	최대 10분	
선택	킥오프 20분 전	최대 10분	
선택	전반전 종료 직후	최대 5분	전반 종료 직후 살수

제18조 경기 규칙

모든 공식경기는 IFAB 경기 규칙을 적용하며, 특별한 사항 발생 시에는 협회 결정에 따른다.

제19조 리그 방식

구분		일정	방식
정규리그	K3리그 (14개팀)	03.07.~11.07.	2라운드 로빈 26라운드, 182경기 (팀당 26경기)
	K4리그 (13개팀)	03.07.~11.08	2라운드 로빈 26라운드, 156경기 (팀당 24경기)
승강플레이오프	승강결정전	11.21.	

1. 정규리그

- ① 경기장소 : 홈 클럽 경기장
- ② 경기시간 : 전 · 후반 각 45분씩, 하프타임은 15분 이내로 한다.
- ③ 승자결정 : 경기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승점부여는 「승 3점, 무 1점, 패 0점」으로 한다.
- ④ 순위결정 : 「승점 - 골득실 - 다득점 - 다승 - 추첨」순으로 한다.

2. 승강플레이오프

- ① 본 규정 제10조(승격과 강등)에 의거, 협회는 K3리그 승격을 희망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은 클럽의 유무에 따라 승강플레이오프(승강결정전)의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승강결정전을 개최하는 경우, 승격을 승인 받은 클럽의 K4리그 최종 성적에 따라 참가 클럽이 결정된다.



③ 승강결정전

가. 경기방식 : 단판경기

나. 경기장소 : K3리그 클럽의 홈 경기장

다. 경기시간 : 전 · 후반 각 45분, 하프타임 15분 이내

라. 승자결정 : 정규시간 - 연장전 - 승부차기

마. 출전선수 및 교체선수

가) 리그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연장전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 교체횟수가 1회가 부여되고, 교체 선수를 1명 추가로 교체 할 수 있다.

다) 정규시간(전.후반) 내에 사용하지 않은 교체 횟수 및 교체 선수 수도 연장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연장전 개시 전 교체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 K4리그 소속의 보충역 선수 중 군복무 원 소속팀이 K1 또는 K2 구단인 선수는 승강결정전에 출전할 수 없다.

제20조 사용구

K3.K4리그 공식 사용구는 스타스포츠의 ‘폴라리스 NX7000’를 사용한다.

제21조 시상

리그에 대한 단체상 및 개인상의 시상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시상 내역은 변경될 수 있다.

1. 단체상

리그	항목	시상내역	평가기준
K3리그	우승	트로피, 메달, 상금(1억원)	정규리그 우승팀
	준우승	상패, 상금(5천만원)	정규리그 준우승팀
	페어플레이	상패, 상금(3백만원)	페어플레이 점수
K4리그	우승	트로피, 메달, 상금(3천만원)	정규리그 우승팀
	준우승	상패, 상금(1천만원)	정규리그 준우승팀
	페어플레이	상패, 상금(3백만원)	페어플레이 점수
공통	베스트프런트(리그별 1팀)	상패, 상금(각 50만원)	사무국 업무 수행 우수 클럽
	플라이투게더(리그별 1팀)	상패, 상금(각 50만원)	사회공헌활동 우수 클럽
	뉴미디어상(리그별 1팀)	상패, 상금(각 50만원)	홍보.마케팅 활동 우수 클럽



최다관중상(최대 2팀)	상패, 상금(1백만원_차등)	유료 관중 최다 클럽
베스트 운영상(리그별 1팀)	상패, 상금(각 50만원)	리그 운영 활동 우수 클럽

2. 개인상

리그	항목	시상내역	평가기준
K3리그	최우수지도자(감독)	트로피, 상금(150만원)	제22조 3항에 의거
	최우수지도자(코치)	트로피, 상금(1백만원)	
	득점상 (1명)	트로피, 상금(2백만원)	
	도움상 (1명)	트로피, 상금(1백만원)	
	최우수선수 (1명)	트로피, 상금(2백만원)	
	영플레이어 (1명)	트로피, 상금(50만원)	
	베스트11 (11명)	트로피, 상금(각 50만원)	
	심판상 (주심1, 부심1)	트로피	
K4리그	최우수지도자(감독)	트로피, 상금(1백만원)	
	최우수지도자(코치)	트로피, 상금(1백만원)	
	득점상 (1명)	트로피, 상금(1백만원)	
	도움상 (1명)	트로피, 상금(50만원)	
	최우수선수 (1명)	트로피, 상금(1백만원)	
	영플레이어 (1명)	트로피, 상금(50만원)	
	베스트11 (11명)	트로피, 상금(각 50만원)	
	심판상 (주심1, 부심1)	트로피	

3. 기타사항

- ① 최우수지도자상은 각 리그 우승팀의 감독 및 코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리그의 득점상 및 도움상은 정규리그 기록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기록이 동률일 경우에는 「출전 경기수가 적은 선수 → 출전 시간이 적은 선수」순으로 결정한다.
- ③ K3리그 베스트 11은 정규리그 경기 수의 50% 이상 출전한 선수를 대상으로 리그 참가팀의 지도자, 주장 선수, 사무국 투표로 선정한다. 베스트11로 선정된 선수 중 최다 득표 선수를 K3리그 최우수선수(MVP)로 선정한다.
- ④ K4리그 베스트 11은 정규리그 경기 수의 50% 이상 출전한 선수를 대상으로 리그 참가팀의 지도자, 주장 선수, 사무국 투표로 선정한다. 베스트11로 선정된 선수 중 최다 득표 선수를 K4리그의 최우수선수(MVP)로 선정한다.
- ⑤ 리그 영플레이어상은 U21선수 중 정규리그 경기수의 50% 이상 출전한 선수를 대상으로 리그 참가팀의 지도자, 주장 선수, 사무국 투표로 선정한다. 다만,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선수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 ⑥ 제3항 ~ 제5항의 개인상 수상자 선정 시 득표수가 동률일 경우 「출전 경기수가 많은 선수 → 출



전 시간이 많은 선수」순으로 결정한다.

- ⑦ 리그의 단체상은 구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협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 ⑧ 최우수심판상은 협회 심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 ⑨ 최다관중상은 유료 관중 제도를 운영하는 구단에 한하여 최대 2개 팀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 ⑩ 제1항 ~ 제9항 기준에 따라 선정된 수상자라 하더라도, 복무가 종료되어 프로팀으로 복귀하거나 해당 클럽이 협회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시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⑪ 제1항 ~ 제9항에 따라 선정된 수상자 또는 클럽은 시상식에 참석하여야 하며, 미참석 시 해당 수상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최종 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⑫ 리그 최종라운드까지 우승팀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우승트로피는 최종라운드 개최 전 순위를 기준으로 상위 2팀에 한하여 준비한다. 다만, 그 외 팀이 우승할 경우에는 보드로 대체하여 시상하고, 트로피는 추후 수여한다. 또한, 우승이 조기에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클럽이 희망하는 홈경기에서 우승시상식을 진행할 수 있다.

제22조 경기출전 및 자격

1. 본 규정에 따라 등록 및 참가신청을 완료한 선수와 지도자만이 공식경기 출전 자격을 갖는다.
2. 협회에 등록을 완료한 임원 중 참가신청이 완료된 자만이 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갖는다.
3. 지도자와 선수는 업무일 기준 경기 전일 18시 이전까지 참가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벤치 착석 가능하다. 단, 일요일 경기의 경우 금요일 18시 이전까지 참가신청 하여야 한다.
4. 선수의 출전
 - ① 모든 선수는 반드시 KFA 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 지참 시에는 출전할 수 없다.
 - ② 클럽은 경기 개시 60분 전까지 출전선수명단(선발출전 11명, 교체대상 9명)을 경기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명단에는 골키퍼(GK) 2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출전선수명단 제출 후, 선발출전 명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출된 출전선수 11명과 교체대상 9명에 한하여 허용하며, 경기 개시 전까지 경기감독관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수 교체로 간주하지 않으며, 당초 선발 출전 선수는 해당 경기 출전이 불가하다.
 - ④ 출전선수명단의 교체 선수가 선발 출전 선수를 대신하여 경기를 시작하고, 주심이 이 변경에 대해 통보 받지 못했을 때 다음과 같이 조치하며, 해당 클럽은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 가. 주심은 그 명단의 교체 선수가 계속 플레이하는 것을 허용한다.
 - 나. 그 명단의 교체선수에게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
 - 다. 출전하기로 했던 선수는 교체 선수가 될 수 없다.



라. 교체허용 선수 숫자는 감소하지 않는다.

마. 주심은 이에 대하여 협회에 보고한다.

- ⑤ 선수 교체가 하프타임 휴식 중 이루어진다면, 그 절차는 경기가 재개되기 전에 완료되어야한다. 만약 주심이 교체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더라도 그 교체선수를 처벌하지 않고 플레이를 계속하도록 하며, 이에 대하여 협회에 보고 한다.
- ⑥ 선수의 유니폼 배번은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번호와 동일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배번과 동일한 유니폼으로 교체하여 착용한 후 경기에 출전하여야 한다.
- ⑦ 선수교체는 5명까지 가능하며, 교체 횟수는 최대 3회로 제한한다. 다만, 하프타임 교체는 교체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⑧ 출전선수명단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U23선수(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최소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U23 선수가 출전 선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부족한 인원 수만큼 출전 선수 명단 인원수가 감소한다.
- ⑨ 출전선수명단에 포함된 U23 선수 1명은 의무적으로 선발 출전해야 한다. U23 의무 선발 출전을 하지 않을 경우, 선수 교체 가능 인원은 4명으로 제한한다.

구분	U23세 출전 선수 명단 *미포함 시 교체 명단 수 감소		U23세 의무 선발 출전 *미포함 시 교체 수 감소	
	U23 포함 수	출전 제출 인원	의무선발	교체출전
K3리그 K4리그	0명	17명	0명	4명
	1명	18명	0명	4명
			1명	5명
	2명	19명	0명	4명
			1명	5명
	3명	20명	0명	4명
			1명	5명

- ⑩ 외국국적 선수는 팀당 최대 4명까지 출전 가능하다.
- ⑪ 보충역 선수는 평일 경기(단, 법정 공휴일 제외)에 참가할 수 없다.
- ⑫ 경기 전 공식 워밍업에 참여할 수 있는 클럽별 선수 인원은 총20명으로 제한한다.

5. 지도자의 출전

- ① K3.K4리그 등록 기준을 충족한 지도자 2인 이상은 반드시 벤치에 착석하여야 한다.
- ② 3회 이상 벤치에 미착석할 경우, 해당 지도자의 등록 및 참가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구단은 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자의 벤치 착석이 불가한 경우, 업무일 기준 해당 경기 2일 전까지 클럽 명의의 공문으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징계중인 지도자의 벤치 미 착석 사항은 제외한다.

⑤ 징계중인 코칭스태프(원정팀 포함)가 경기를 관전하고자 할 경우, 홈 클럽은 본부석 측 좌석 제공하고, 해당 코칭스태프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상기 사항을 위반한 코칭스태프에게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6. 벤치 착석(출전선수명단에 기재된 인원 중 KFA 등록증을 지참한 자에 한함)

구분	대상	비고
선수	선발 출전 11명, 교체 대상 9명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는 착석 불가
코칭스태프 팀 스태프	(필수) 감독 1인, 코치 1인 (선택) 피지컬코치 1인 (선택) 플레이코치 1인	- 코칭스태프, 팀지원스태프 최대13명 까지 착석 - 구단 대표자 및 기타 임원은 착석 불가
	(필수) 팀 매니저 1인 (필수) 의무트레이너 1인 (선택) 팀닥터(주치의), 통역 등	

제23조 뇌진탕 교체

1. 각 팀은 경기당 최대 1명의 ‘뇌진탕 교체’를 할 수 있다.
2. ‘뇌진탕 교체’는 기존 교체 선수 숫자와 무관하다.
3. 뇌진탕 또는 뇌진탕 증세로 의심되는 선수는 더 이상 경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선수대기실 혹은 의료시설로 이동해야 한다.
4. ‘뇌진탕 교체’ 사용 시 상대팀도 ‘추가 교체’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팀의 교체 사유는 ‘뇌진탕’ 증상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뇌진탕 교체’를 위해 일반 교체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팀은 추가 교체 기회가 없다.
5. ‘뇌진탕 교체’는 소속팀이 결정하며 심판진은 ‘뇌진탕 교체’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뇌진탕 교체’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심판진은 경기 종료 후 심판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6. ‘뇌진탕 교체’와 ‘추가 교체’는 협회가 지정한 교체 용지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7. ‘뇌진탕 교체’의 경우라도 외국인 선수 출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8. ‘뇌진탕 교체’된 선수의 경기 출전은 충분한 휴식과 의료 검사 및 치료를 받은 후 소속팀에서 결정한

9.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IFAB 경기규칙 및 ‘뇌진탕 교체’ FIFA 프로토콜 최신판을 따른다.

제24조 안전

1. 홈 클럽은 경기장 개문 시부터 경기종료 후 모든 관중 및 관계자가 퇴장할 때까지 선수, 스태프, 심판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와 관중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2. 협회, 홈 또는 원정 클럽, 선수, 팀 임원, 관계자를 비방하거나 경기 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클럽은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경기감독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클럽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3. 관중의 소요, 난동으로 경기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선수, 심판, 팀 임원을 포함한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클럽은 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4. 홈경기 개최 시 홈 클럽은 아래의 안전 사항을 경기 시작 60분 전까지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
 - ① 응급 구조인력 배치 : 국가 공인 자격증 소지자(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 가. K3리그 : 2명 이상
 - 나. K4리그 1명 이상
 - ② 응급 구조차량 배치 : 자동제세동기(AED), 산소호흡기 구비 구급차량
 - 가. K3리그 : 2대 이상
 - 나. K4리그 1대 이상
 - ③ 배치된 구급차가 경기 중 긴급 후송 상황으로 경기장을 떠날 경우를 대비하여 홈 클럽은 예비차량(사무국 차량)을 반드시 준비하고, 해당 차량에 “구급차 예비차량”임을 명확히 표시한 후 경기 중 대기하여야 한다.
 - ④ 홈 클럽은 관중 안전을 위해 구급차 추가 배치를 적극 권장한다.
5.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클럽은 소속 선수의 건강 상태(심장 질환, 호흡기 질환 등)를 반드시 체크한 후 경기에 출전시켜야 한다.
6. 선수단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쿨링 브레이크’ 를 실시할 수 있다.
 - ① 혹서기 기온상승에 따라 WBGT(체감 온도 지수)가 30℃ 전, 후일 경우 진행할 수 있다.
 - ② 경기감독관 및 해당 경기의 심판진이 본 제도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팀에 통보한다.
 - ③ 쿨링 브레이크는 전·후반 각 1회씩 경기개시 후 30분 전·후 아웃 오브 플레이 시 시행함을 권장하며, 휴식 시간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7. 클럽은 선수단 및 관중의 안전을 위한 용역(보안·안전 전문)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8. 리그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전염병 등의 발병 또는 발병이 우려될 경우 협회는 안전을 위해 모든 클럽 또는 특정 클럽에 선수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해당 클럽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25조 경기일정

공식경기의 경기일정은 협회의 결정에 따르되, 특수한 경우에는 클럽과 협의 후 협회가 최종 결정한다.

제26조 경기일시 또는 개최지 변경

1. 경기 개최일은 아래에 정해진 일자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평일 경기의 경우 양 팀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개최 가능하다. 다만, 협회는 중계방송 등 기타 사정에 따라 경기 개최일을 변경 할 수 있다.

구분	정규리그	승격플레이오프(승강결정전)
K3리그	수·금·토·일요일 / 법정휴일	토·일요일 / 법정휴일
K4리그		

2. 경기개시 시간은 아래에 정해진 시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회는 중계방송 등의 기타 사정에 따라 경기 개최 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구분	경기 시간	비고
2월~6월	13:00 이후	
7월~9월	16:00 이후	
10월~12월	13:00 이후	

3. 리그의 최종전은 원칙적으로 14시에 동시 개최로 하며, 중계방송 등의 기타 사정에 따라 협회가 변경할 수 있다.

4. 공식경기의 일시, 개최지 변경은 해당 클럽 간의 합의 후 협회의 승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내용을 기준으로 협회가 심의하여 조정여부를 결정한다. 협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일정변경으로 인한 비용 발생은 귀책사유가 있는 클럽에서 부담한다.

5. 홈 클럽 또는 원정 클럽이 경기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경기 개최일 7일 이전까지 상대 클럽의 동의를 받아 협회에 신청해야 하며, 협회는 변경 여부를 해당 경기 3일 전까지 양 클럽에 통보한다. 단, 경기 개최일 7일 이내에는 일정 변경 요청이 불가하다.

6. 홈경기 일정 변경 건이 전체 홈경기 일정의 30%가 넘을 경우 차기연도 홈경기 박탈, 리그 참가 등이 제한될 수 있다.



7. 홈 클럽이 홈경기를 포기할 경우 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며, 3회 이상 포기할 경우 차기연도 홈경기 개최권 박탈, 리그 참가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8. 홈 클럽이 홈경기 개최 포기 시 원정 클럽에게 홈경기 개최권이 주어지며, 원정 클럽도 홈경기 개최가 불가할 경우 협회에서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에 경기를 개최하며, 경기 운영은 기존 홈 클럽에서 담당하며,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도 홈 클럽에서 부담한다.
- 9. 참가 클럽이 협회의 규정 및 방침을 준수하고자 시즌 중 홈 경기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는 실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 홈 경기장 변경을 승인을 할 수 있으며, 이는 6항의 변경 비율 산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7조 경기시간 준수

- 1. 모든 클럽은 미리 정해진 경기시작 시간(킥오프 타임)과 경기 중 휴식시간(하프타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하프타임 휴식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양 팀 출전선수는 후반전 출전을 위해 후반전 개시 3분전까지 심판진과 함께 대기 장소에 집결하여야 한다.
- 2. 클럽이 경기시작 시간 또는 하프타임 종료 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경기시작 또는 재개가 지연될 경우, 해당 클럽은 사유서를 첨부한 공문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3회 이상 미준수 시 해당 클럽은 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된다.
- 3. 홈 클럽은 경기 개시 90분 전까지 당일 경기 카운트다운을 경기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후 심판진, 원정 클럽, 중계팀(편성 시)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경기 카운트다운에는 경기 운영 및 구단 행사에 대한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 몰수

- 1. 몰수라 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경기에 대한 클럽의 자격 상실을 말한다.
- 2.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클럽은 몰수 처리된다.
 - ① 경기 개시 15분 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 ② 등록되지 않은 선수가 경기에 출전한 경우
 - ③ 참가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등록 선수가 경기에 출전한 경우
 - ④ 경기 개시 15분 전까지 KFA 등록증 소지한 선수가 7명 미만일 경우
 - ⑤ 경기 중 각종 사유로 인하여 팀이 경기를 지연하거나 집단으로 경기장을 이탈한 후, 경기감독관 또는 심판진으로부터 경기 재개 통보를 받고 3분 이내에 경기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 ⑥ 위 '5'목의 상황에서 3분 이내에 경기에 복귀하였으나, 경기 재개 후 재차 경기를 지연하거나 집단



으로 경기장을 이탈한 후, 경기감독관 또는 심판진으로부터 경기 재개 통보를 받은 후 주어진 3분 중에서 잔여 시간 내에 경기를 재개하지 않은 경우

- ⑦ 다른 선수의 KFA 등록증을 제출하여 경기에 출전한 경우
 - ⑧ 보충역 선수가 협회 승인을 받지 않고 경기에 출전한 경우
 - ⑨ 그 외 참가 자격 위반 행위나 경기 포기 행위를 한 경우
3. 몰수 클럽에 대해서는 「패」처리하며, 상대 클럽에게는 「3:0 승」으로 처리하고, 승점 3점을 부여한다. 단, 3골차 이상으로 승리했거나 이기고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스코어를 그대로 인정한다.
4. 몰수 처리 경기라 하더라도 양 클럽 선수의 개인기록(득점, 도움, 경고, 퇴장 등)은 인정한다. 단, 부정 선수의 기록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29조 실격

1. 실격이라 함은 리그(대회)의 모든 경기에 대한 클럽의 자격 상실을 말한다.
2.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클럽은 협회 공정소위원회 회부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실격 처리될 수 있다.
 - ① 대회 참가신청 후 전체일정에 대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 ② 정규리그 잔여 경기에 더 이상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
 - ③ 정규리그에서 3경기 이상 몰수처리를 당한 경우
 - ④ 클럽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리그 참가 자격 정지 및 박탈이 결정된 경우
3. 정규리그 전체 경기 수의 2/3이상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실격 클럽이 발생 한 경우에는 실격 클럽과의 잔여경기를 허용하지 않으며, 리그에서 얻은 승점 및 스코어를 모두 무효 처리한다.
4. 정규리그 전체 경기 수의 2/3이상을 수행하였을 때, 실격 클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격 클럽과의 이전 경기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잔여경기 상대팀에게 「3:0 승」으로 처리하고, 승점 3점을 부여한다.
5. 승강결정전에서 승리한 클럽이 실격 대상으로 발각되었을 경우, 해당 클럽은 실격처리하며, 해당 경기는 몰수경기로 처리한다.
6. 실격 처리 경기라 하더라도 양 팀 선수의 개인기록(득점, 도움, 경고, 퇴장 등)은 인정한다.

제30조 선수, 임원 및 팀에 대한 제재

1. 선수에 대한 제재
 - ① 경고



가. 최초 3회 경고 누적 시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며, 3회 누적 이후에는 2회 누적 시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나. 경기 중 1회 경고를 받은 선수가 경고 없이 퇴장을 당할 경우 다음 2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며, 당초 받은 경고는 그대로 누적된다.

다. 경고를 1회 받은 선수가 다른 경기에서 2회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할 경우,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며, 당초 받은 경고는 그대로 누적된다.

라. 위의 ‘다음 경기’라 함은 경기번호에 상관없이 해당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경기를 말한다.

마. 정규리그에서 받은 경고는 승강플레이오프에 연계 적용되지 않는다.

바. 선수가 리그 중 동일 리그 내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경우에도 기존의 경고는 연계 적용된다.

② 퇴장

가. 경기 중 퇴장 시 다음 2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며, 퇴장사유에 따라 공정소위원회에서 추가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나. 경기 중 경고 2회 누적으로 인한 퇴장 시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다. 위의 ‘다음 경기’라 함은 경기번호에 상관없이 해당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경기를 말한다.

라. 정규리그에서 받은 퇴장은 승강플레이오프에 연계 적용된다.

마. 승강플레이오프에서 받은 퇴장은 승강플레이오프 내 다음 경기가 있을 경우 연계 적용된다.

바. 선수가 리그 중 동일 리그 내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경우에도 퇴장은 연계 적용된다.

2. 팀 스태프 및 임원에 대한 제재

① 최초 3회 경고 누적 시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며, 3회 누적 이후에는 2회 누적 시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② 경기 중 퇴장 당한 지도자(팀스태프) 및 임원은 다음 2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며, 퇴장사유에 따라 공정소위원회에서 추가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무단 입장하거나 시설 및 기물파괴, 폭력조장 및 선동, 오물투척 등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지도자(팀스태프) 및 임원은 즉시 퇴장 조치하고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경기 중 팀 벤치 이외의 장소에서 팀을 지도한 지도자는 즉시 퇴장조치 하고,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징계중인 지도자는 팀 벤치 및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도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⑥ 지도자 외의 임원이 팀 벤치 및 공개된 장소에서 지도 행위를 하였을 경우 즉시 퇴장조치 하고,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⑦ 팀 의무로 등록된 자가 당일 해당 클럽 경기 중 벤치에 착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클럽은 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된다.

⑧ 팀 임원, 스태프 또는 선수가 온-오프라인 등 공개된 장소에서 리그 또는 특정 클럽을 비하,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 등으로 협회 또는 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해당자는 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된다.

⑨ 경기 중 앰프(음향기기 일체), 각종 호각류, 레이저빔, 홍염 및 관중의 난입 및 기타 적절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한 응원 등 경기진행 및 선수단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해당 클럽은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하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클럽에 있다.

⑩ 징계중인 자의 징계수위별 경기 중 활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필드지역	경기운영지역	관중석		비고
	필드, 벤치, 워밍업존	선수대기실, 입장터널, VIP실 등	무관중	유관중	
자격 정지	불가	불가	불가	가능	
출전 정지	불가	가능	가능	가능	

3. 기타사항

① 경기 중 또는 경기 후에라도 심각한 반칙 행위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소위원회에서는 해당 클럽, 선수 또는 임원에 대한 추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② 경기 또는 경기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하여 경기감독관은 영상 또는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으며, 경기 감독관의 촬영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클럽 또는 당사자는 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③ 클럽은 소속 선수, 팀스태프 및 임원의 징계 내용을 숙지할 의무가 있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해당 클럽에서 감수한다.

④ 공정소위원회의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년도에 연계 적용한다.

제31조 제소

1. 규정 위반, 경기 중 불미스러운 행위 등 경기와 관련한 제소는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클럽 명의로 공문으로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한다.

2. 경기 중 제소는 불가하며,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허용하지 않는다.

3. 사실무근으로 제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2조 경기중지 결정

1. 경기 전 또는 경기 중 중대한 문제 또는 사고 등으로 경기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



주심은 경기감독관에게 경기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감독관은 요청을 근거하여 홈 클럽 및 원정 클럽 관계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경기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2. 1항의 경우 또는 관중의 난동 등으로 경기장의 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 경기감독관은 주심의 경기 중지 요청이 없더라도 경기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3. 경기감독관은 경기중지 결정을 내린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재경기

1. 악천후, 천재지변, 시설미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경기가 중단 될 경우, 해당 경기를 ‘순연 경기’라 하고, 순연된 경기의 개최를 ‘재경기’라 한다.
2. 홈 클럽의 귀책사유(준비 부족, 시설 점검 미흡, 경기 운영 미비 등)로 인하여 순연경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구단은 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된다.
3. 재경기는 익일 우선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일시 및 장소는 협회에서 결정한다.
4. 재경기는 경기가 중단된 시점부터 재개한다.
 - ① 출전선수 및 교체대상 선수의 명단은 순연경기와 동일하여야 한다.
 - ② 순연경기에서 발생한 득점, 경고 및 퇴장, 교체 기록은 그대로 유지된다.
 - ③ 순연경기의 출전 선수가 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경우, 교체대상 선수 명단 내에서 교체 가능하며, 이는 선수 교체로 인정되며, 교체를 모두 소진한 클럽의 선수가 부상 등의 사유로 재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경우, 양 클럽에 교체 인원을 한 명씩 추가로 부여한다.

제34조 귀책사유가 있는 클럽의 비용 보상

1. 홈 클럽의 귀책사유에 의해 공식경기가 개최불가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홈 클럽은 원정 클럽이 지출한 경비 전액(교통비, 숙박비 등)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원정 클럽의 귀책사유에 의해 공식경기가 개최불가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원정 클럽은 홈 클럽에 발생한 경비 전액(경기운영 비용 및 입장권 환불 수수료, 교통비 및 숙박비 등)을 보상하여야 한다.
3. 중계경기 시 홈 또는 원정 클럽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공식경기가 취소 또는 중단 되었을 경우 해당 클럽은 해당 경기 중계제작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리그 적립 계좌’로 별도 관리하여 추후 리그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4. 원정 클럽의 임원, 지도자(팀스태프), 선수 등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홈 클럽 경기장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원정 클럽은 파손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된다.



5. 상기 1항, 2항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5조 도핑

1. 도핑방지규정은 선수의 건강보호와 공정한 경기운동을 위함이며, 등록된 지도자 및 선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www.kada-ad.or.kr, 이하 'KADA')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리그 기간 중 KADA에서 시행하는 도핑 검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 치료를 위하여 금지약물을 사용할 경우, 치료목적사용면책(이하“TUE”)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기 출전 20일 전까지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4. 협회 등록팀 소속 선수 및 관계자(감독, 코치, 트레이너, 팀 의무,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는 도핑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KADA의 검사 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
5. 도핑검사 후 금지약물이 검출될 경우 KADA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되며,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4장 장비

제36조 유니폼 등록 및 변경 승인

1. 클럽은 협회에 등록하고 승인된 유니폼만 착용하여야 한다.
2. 클럽은 유니폼의 색상 및 시안에 대한 협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필드 유니폼은 주·보조 유니폼을, GK 유니폼은 주·보조·써드 유니폼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4. 시즌 중 유니폼 색상은 변경할 수 없다. 단, 디자인, 광고 변경 및 기념유니폼 제작을 하고자 할 경우, 경기시작 7일 전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유니폼의 시안을 협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유니폼 색상 및 문자 표기

1. 보조 유니폼은 주 유니폼과 명확하게 대비되는 연한색(흰색 권장)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스트라이프 무늬 또는 문양은 주 유니폼이나 보조 유니폼(필드 및 GK 포함) 중 어느 한 디자인에만 적용할 수 있다.
2. 스타킹의 색상은 상·하의 색상 중 한 가지 색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주 유니폼 상/하의 또는 스타킹에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두 가지 색상 모두 보조 유니폼에 포함될 수 없다.
3. 클럽 유니폼에는 선수 개인의 개별 광고, 캠페인 등 기타 문구를 별도 등록하여 착용할 수 없다.
4. 기능성 의류(타이즈 등)를 착용하고자 할 때에는 유니폼 색상과 동일한 색상을 착용해야 하고, 데이



평 사용 시 스타킹 색상과 동일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 ① 상의 이너웨어의 색상은 단일한 색상으로 소매의 주색상과 같거나, 상의 소매의 문양/색상 조합을 정확히 복제한 것이어야 한다.
- ② 유니폼 상의 소매 부분의 주색상이 상대팀 유니폼의 주색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에는 유니폼 상의의 주 색상으로 착용할 수 있다.
- ③ 하의 이너웨어의 색상은 반드시 하의 주 색상 또는 하의 끝부분의 주색상과 동일해야 한다.

제38조 착용 의무

- 1. 주장 선수는 반드시 주장 완장을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하여야 한다.
- 2. 경기에 참가하는 각 클럽 선수는 반드시 협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 유니폼(색상, 디자인, 광고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만약 승인을 받지 않은 다른 유니폼을 착용했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3. 클럽은 모든 경기에 주 유니폼과 보조 유니폼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경기 당일 심판진 유니폼 색상과 아래의 배정 기준을 고려하여 경기감독관이 최종 결정한다.

우선 순위	홈 팀	원정 팀	비고
1	주 유니폼	보조 유니폼	
2	주 유니폼	주 유니폼	
3	주 유니폼	주+보조 유니폼 혼합	
4	보조 유니폼	주 또는 보조 유니폼	

- 4. 벤치에 착석하는 선수는 반드시 리그 전용 빙스를 착용하여야 한다. 홈·원정 클럽은 모든 경기에 협회에서 제공하는 주·보조 빙스를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당일 클럽별 빙스 색상은 경기 90분 전 경기감독관이 결정한다.
- 5. 클럽은 협회에서 제공하는 미디어 빙스를 반드시 활용하여야 한다.

제39조 선수 이름, 배번 및 마크

- 1. 선수 유니폼에는 반드시 선수 이름과 배번이 포함되어야 하며, 선수 이름 표기법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표기되어야 한다.

국문		영문		규격
성 이름	홍길동	성(대문자) + 이름 전체	HONG Gildong	높이 5cm~7.5cm



2. 선수 이름은 유니폼 상의 뒷면에, 배번은 상의 뒷면과 하의 앞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3. 선수의 배번은 유니폼 색상과 명확히 판별될 수 있는 색상으로 배번의 색상은 모두 동일하여야 한다.
4. 배번의 규격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	규격	위치
상의 앞면	10cm~15cm	클럽의 선택에 따라 표시
상의 뒷면(필수)	25cm~35cm	뒷면 정중앙 부분에 위치하도록 표시
하의 앞면(필수)	10cm~15cm	클럽의 선택에 따라 앞면 아래에 표시

5. 유니폼에는 클럽을 대표(상징)하는 로고 또는 엠블럼, 마스코트 등의 표식을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 위치와 규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규격	위치
상의 앞면	200㎠ 이하	클럽의 선택에 따라 가슴부분 1곳 표시
하의 앞면	50㎠ 이하	오른쪽 또는 왼쪽 앞부분 아래 1곳
스타킹	25㎠ 이하	클럽에 따라 위치 선택, 양쪽 모두 가능

6. 클럽은 국내외 다른 클럽의 엠블럼을 유니폼에 부착할 수 없다.

제40조 협회 패치 및 클럽 광고

1. 클럽은 유니폼 상의 왼쪽소매 측면 정중앙에 리그 공식 패치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리그 패치 하단에는 리스펙트 캠페인(가로형) 패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2. 유니폼에는 스폰서 명칭, 상품명 등을 표시할 수 있으며, 유니폼에 스폰서 명칭, 상품명 등 광고를 표시할 경우, 위치, 수량, 크기 등에 대해 사전에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식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의 유니폼에 부착된 광고는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 광고가 배번, 연고지역 명, 협회의 의무 부착물에 방해를 줄 경우 협회는 클럽에 수정하도록 요청하고, 클럽은 요청 15일 이내에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4. K3리그 또는 K4리그 전년도 우승 클럽의 경우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우승팀 패치 시안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41조 상호, 연고지명 표시

1. 상의, 하의, 스타킹에 유니폼 제작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상호명(브랜드명, 로고, 엠블럼)은 클럽 자율



에 따라 그 수량과 크기를 결정하여 표시한다.

2. 연고지명의 표기는 클럽 자유훈에 따라 영문 또는 국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42조 기념 유니폼

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창단 기념일 등) 기존 등록 유니폼 이외 별도의 기념 유니폼을 제작하여 착용할 수 있으며, 경기 시작일 7일전까지 협회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착용한다.

제43조 전자장비

1. EPTS 사용을 원하는 경우, FIFA 품질 프로그램(FIFA Quality Programme)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만 사용 가능하다.
2. 경기장 기술지역(Technical Area)에서 스태프는 선수의 복지와 안전, 전술적/코칭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소형, 이동식, 휴대용 장비 (마이크, 헤드폰, 이어폰,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다.
3. 선수들(대기 선수/교체된 선수/퇴장 선수 포함)은 전자 장비 또는 커뮤니케이션 장비를 일절 사용하지 않거나 착용해서는 안 된다. 단, EPTS가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허가되지 않은 전자 장비를 사용하거나, 전자/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면 판정항목 사 기술 지역에서 퇴장 조치한다.

제5장 AD카드 운영

제44조 AD카드

1. AD카드는 임원, 스폰서, 미디어, 스태프, 자원봉사자, 데이터수집관 등으로 구분하여 제작할 수 있다.
2. 클럽은 협회에서 AD카드 디자인을 제공하는 경우 홈경기 운영에 필요한 각종 AD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하나, 협회에서 별도의 디자인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클럽의 내부 기준에 따라 제작 가능하다.
3. 클럽은 AD카드 소지자의 통행 가능 구역을 경기장 내 주요지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4. 협회는 중계스태프, 미디어, 의료, 볼스태프를 위한 조끼(Bib)를 제작하여 각 클럽에 제공할 수 있으며, 협회에서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는 팀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활용 가능하다.
5. 협회는 스폰서, 미디어 등의 AD카드를 발행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클럽은 협회가 발행한 AD카드 소지자가 경기장 지정 출입구를 통해 입장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장 징계

제45조 목적

K3·K4리그 운영과 관련 징계의 적절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46조 적용 범위

1. 이 규정 내 징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 ① 협회에 등록된 클럽, 코칭스태프, 선수, 심판
 - ② 각 클럽의 임원 및 직원
 - ③ 협회의 지휘 감독의 대상인 단체 및 개인

제47조 공정소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정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공정소위원회는 협회의 공정위원회 부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장, 협회 대회위원회 위원장과 심판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3. 공정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협회의 공정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인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공정소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소속 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협회 사무국 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심의 준비 및 소집 통지, 회의록 작성, 의결 사항 통지 및 보고 등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진행한다.

제48조 공정소위원회 운영

1. 협회는 징계심의 1일 전까지 심의 대상자 또는 팀에 서면이나 유선으로 징계심의를 공지하며 심의대상자는 공정소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공정소위원회의 결정은 긴급 제재이므로 재심 청구 또는 경감, 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징계 기준은 ‘리그 유형별 긴급 제재 징계 기준표’에 따르며,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등의 사유로 리그 도중 해당 기준표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사항은 즉시 적용한다.



4. 그 외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협회 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의 관련 규정과 AFC, FIFA의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
2. 본 대회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IFAB 경기규칙서에 따라 대한축구협회에서 결정한다.
3. 본 규정은 2026년 시즌에 한하여 적용된다.

별첨 1 유형별 긴급제재 기준표

유형	내용	대상 및 긴급제재 기준		
		선수	지도자 또는 팀 임원	팀
1. 경기중 일반적 위반행위	심판에 의한 경고 및 퇴장	대회규정과 경기규칙에 의한		
2. 경기관련 특정 위반행위	1. 폭력행위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2. 폭언, 모욕 및 위협 행위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3. 판정항의 또는 비신사적 행위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4. 경기장 무단 난입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5. 시설 및 기물 파괴	※ 출전정지 2 ~ 4경기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6. 응원단의 난동 행위 유발 등 폭력을 조장하거나 이를 방조, 방관한 행위	※ 출전정지 2 ~ 4경기	※ 출전정지 2 ~ 4경기	
	7. 간단한 응원품도 위반(응원단의 난동, 심판에 대한 항의 등)	-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8. 경기중단 또는 경기지연 행위	※ 출전정지 1 ~ 4경기	※ 출전정지 1 ~ 4경기	
	9. 경기 포기 또는 불참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10. 경기조작 (공여 및 수수)	※ 출전정지 4경기	※ 출전정지 4경기	
	11. 심판매수 (공여 및 수수)	※ 출전정지 4경기	※ 출전정지 4경기	
	- 금지약물(도핑)행위	협회 징계기준(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른다		
3. 명예 실추 행위	12. 명예실추 또는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4. 직권남용 행위, 무고 또는 위증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② 타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무고하는 행위	협회 징계기준(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른다		경고 ~ 승점감점
5. 금전비리행위 등	① 배임, 횡령, 절도 ② 향응 및 뇌물수수행위 ③ 불법 스퀘트 및 거래	협회 징계기준(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른다		
6. 협회규정 및 결정사항 위반행위	13. 규정 및 지시사항 위반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14. 경미한 불미행위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15. 이적선수가 활동시기를 위반하여 출전한 행위	※ 출전정지 1경기	※ 출전정지 4경기	
	16. 징계중인 선수의 경기출전	※ 출전정지 1경기	※ 출전정지 4경기	
	17. 징계중인 지도자의 벤치 착석 및 지도행위	-	※ 출전정지 4경기	
	18. 출전선수 명단에 없는 선수의 출전 행위	※ 출전정지 1경기	※ 출전정지 4경기	
	19. 비 등록 선수의 경기 출전	-	※ 출전정지 4경기	
	20. 수업 무단 불참 또는 수업 시간 중 훈련 및 경기 참가	-	※ 출전정지 4경기	
21. 지도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행정, 의무 등)이 벤치에서 지도한 행위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7. 성폭력, 성추행 등 행위	① 성추행, 성희롱 등 행위 중 매우 중대한 경우 포함 ② 성, 국적, 인종 및 종교에 따른 차별	협회 징계기준(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른다		
8. 인권침해	언어폭력, 정당한 휴식권, 수업권제한 등 부당한 제재 행위, 선수 지도 중 흡연 또는 음주행위(선수와 대상자에 한정)	협회 징계기준(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른다		
9. 기타	가. 본 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나, 징계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정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특히 팀 지도자, 관계자, 학부모 또는 응원단 난동의 경우 '승점 감점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유형별 긴급제재는 우선 조치사항이며, 사안에 따라 공정위원회에서 추가로 형량의 확대를 결정할 수 있다. 라. 리그 및 대회 등 공정소위원회 유형별 긴급제재 기준 외, 사안에 따라 공정위원회 결정전까지 출전정지 할 수 있다 마. '리그 유형별 긴급 제재 징계 기준표'는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등의 사유로 해당 기준표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사항은 즉시 적용한다.			



KFA
Korea Football
Association

2026 K3·K4 챔피언십 운영규정

Play ON



제1장 대회규정

제1조 명칭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주최, 주관, 후원

제4조 대회 기간 및 장소

제5조 참가자격

제6조 참가클럽

제7조 참가신청

제8조 AD카드

제9조 행사의 참가

제10조 대회의 취소

제11조 경기 규칙

제12조 경기 장소의 결정

제13조 경기 진행 및 승자결정 방식

제14조 출전 선수 명단

제15조 뇌진탕 교체

제16조 유니폼

제17조 전자장비

제18조 교체 선수

제19조 경기의 취소 및 중지

제20조 재경기 실시

제21조 선수,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 클럽에 대한 제재

제22조 제소

제23조 안전 및 질서유지

제24조 사용구 및 지원

제25조 시상

제26조 홈경기 운영

제27조 원정 클럽을 위한 관객석 확보

제28조 도핑

제29조 마케팅

제30조 클럽의 정치적 중립성

제31조 기타사항



제1장 대회규정

제1조 명칭

대회 명칭은 「2026 K3·K4 챔피언십」이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회’는 2026 K3·K4 챔피언십을 지칭한다.
2. ‘협회’는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를 지칭한다.
3. ‘홈 클럽’은 홈 경기를 개최하는 클럽을 지칭한다.
4. ‘AD카드’는 KFA등록증을 지칭한다.
5. ‘외국국적 선수’는 외국 협회의 대표팀 출전 자격을 보유한 선수를 지칭한다.
6. ‘무자격 선수’는 미등록선수, 경고누적 또는 퇴장 및 징계 등으로 경기출전 자격이 없는 모든 선수를 말한다.

제3조 주최, 주관, 후원

협회가 주최, 주관하고, 홈 클럽이 공동 주관한다.

제4조 기간 및 장소

1. 대회는 각 클럽의 홈 경기장에서 개최한다.
2. 경기 일정은 국내·외 대회 및 리그 일정, 중계 일정 등을 고려하여 협회가 정한 다음의 경기 일정에 따른다. 단, 결승전은 필요시 협회가 코리아풋볼파크 등 중립경기장에서 개최할 수 있다.
3. 경기개시 시간은 아래에 정해진 시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회는 중계방송 등의 기타 사정에 따라 경기 개최 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구분	경기일	경기 시간	장소
1라운드	05월 05일(화)	14:00 이후	각 홈구장
	05월 06일(수)	16:00 이후	
16강	05월 27일(수)	16:00 이후	
8강	06월 13일(토)	14:00 이후	
4강	08월 15일(토)	16:00 이후	
결승	09월 19일(토)	16:00 이후	

- 공식경기의 일시, 개최지 변경은 해당 클럽 간의 합의 후 협회의 승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내용을 기준으로 협회가 심의하여 조정여부를 결정한다. 협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일정변경으로 인한 비용 발생은 귀책사유가 있는 클럽에서 부담한다.
- 대.내외적 환경 변화 및 기타 경우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제5조 참가자격

본 대회의 참가 클럽에 대한 자격은 2026 K3·K4리그 참가 클럽에 한하며, 최종적으로 협회가 부여한다.

제6조 참가클럽

본 대회에는 2026 K3·K4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클럽이 반드시 참가하여야 하며, 대회 참가 클럽은 다음과 같다.

구분	참가클럽
K3 (14팀)	FC목포, FC강릉, 경주한수원FC, 당진시민축구단, 대전코레일FC, 부산교통공사축구단, 시흥시민축구단, 양평FC, 여주FC, 울산시민축구단, 전북현대모터스N, 창원FC, 춘천시민축구단, 포천시민축구단,
K4 (13팀)	거제시민축구단, 금산인삼FC, 기장군민축구단, 남양주시민축구단, 서산FC, 서울중앙축구단, 세종SA축구단, 제천시민축구단, 진주시민축구단, 진천HRFC, 평창유나이티드, 평택시티즌, 함안군민축구단

제7조 참가 신청

- 대회 참가 클럽은 별도의 참가 신청 절차 없이 2026 K3·K4리그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협회 통합 온라인시스템(joinkfa.com)을 통해 일괄 참가 신청한다.



2. 클럽

- ① 클럽은 제5조(참가자격)에 의거하여 자동으로 신청된다.
- ② 클럽은 소속된 리그에 등록된 유니폼과 배번 정보를 그대로 준용한다.

3. 선수

- ① 소속 클럽의 등록 선수 중 최소 20명, 최대 50명까지 참가 신청 할 수 있다.
- ② 선수 배번은 1번부터 99번까지 가능하며, 배번 변경은 불가하다.

4.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

- ①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 수는 최대 13명(통역포함)까지 참가 신청할 수 있다.
- ② 지도자는 참가클럽이 소속된 리그의 지도자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 ③ 지도자 및 선수는 두 개 이상의 팀에 중복 참가 신청을 할 수 없다.

5. 참가 선수 변경

- ① 참가 신청 종료 후, 선수 교체는 부상, 군복무 전역 및 추가 등록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 ② 참가 라운드 경기 1일전 16시까지 공문 및 증빙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AD카드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는 반드시 AD카드를 지참해야하며, 미지참시에는 해당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제9조 행사 참가

1. 대진추첨식

- ① 대진은 협회가 정한 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대진추첨식과 함께 대표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일정 및 운영 방식은 참가 클럽에 별도 공지한다.
- ③ 대진 추첨 완료 후, 경기장 시설(관중석, 조명, 잔디, 음향 등), 중계, 기타 사유 및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협회에서 경기일정(시간, 홈-어웨이 등)를 조정 할 수 있다.
- ④ 협회는 대진추첨식에 참가 클럽의 감독 및 선수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2. 미디어 데이

- ① 협회가 일정과 장소를 지정하며, 해당 클럽에 별도 공지한다.
- ② 해당 클럽의 감독과 선수 1명이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협회가 참석 대상자를 추가로

지정 할 수 있다.

3. 경기 당일 미디어 활동

- ① 모든 클럽은 협회가 요청하는 경기 당일 미디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대회의 취소

협회는 천재지변,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대회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회를 취소 할 수 있다.

제11조 경기 규칙

대회의 모든 경기는 『IFAB 경기규칙』을 적용하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 시에는 협회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경기 장소의 결정

1. 홈 클럽 소속 리그에서 사용하는 홈 경기장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홈 경기장 외에 경기장에서 경기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클럽 연고지역 내에 있는 경기장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2. 홈 클럽의 경기 개최가 불가한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경기 장소를 결정한다. 단, 경기 당일에 개최가 불가한 경우는 규정 제19조(경기의 취소 및 중지)에 따른다.

① 어웨이팀 경기장 개최

- 가) 홈 클럽이 경기 개최를 포기한 경우
- 나) 홈 클럽이 천재지변, 외부행사 등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홈경기 개최가 불가한 경우
- 다) 홈 클럽 경기장의 그라운드 상태가 경기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명백히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 라) 홈 클럽 경기장이 경기 개최에 필요한 시설 기준(관중석, 조명, 음향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경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단, 시설 기준 충족 여부는 협회가 시설 점검을 통해 결정한다.

② 제3지역 경기장 개최

- 가) 양 클럽 모두 홈 경기장 또는 연고 지역 내 대체 운동장에서 경기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경기장 변경에 대한 귀책사유는 홈 클럽에 있으며, 홈 클럽이 제3경기장을 섭외하고 경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홈경기 개최권 박탈



가) 홈 클럽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홈경기 개최 포기 또는 경기 운영 규정 위반 등의 문제 발생시, 해당 클럽의 잔여 라운드 홈경기 개최권은 모두 박탈되며, 해당 클럽에게 금전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3. 협회는 원활한 경기 개최를 위하여 사전 경기장 시설 점검을 할 수 있다.
4. 클럽이 경기장 시설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홈경기를 개최한 경우, 해당 클럽은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3조 경기 진행 및 승자결정 방식

1. 1라운드 ~ 결승

- ① 경기방식 : 단판경기
- ② 경기시간 : 전·후반 각45분, 하프타임 15분이내, 연장전 전·후반 각15분
- ③ 승자결정 : 경기 결과 → 연장전 → 승부차기

2. 연장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기 종료 후 5분 이내의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연장전 하프타임 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1분 이내의 짧은 휴식이 허용된다.
3. 승부차기로 승자를 결정할 경우 ‘AB AB’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한다.

제14조 출전선수명단

1. 제7조(참가 신청)에 의거하여 신청한 선수,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만이 경기 출전 자격을 가지며, 홈 클럽과 원정클럽은 경기개시 90분 전까지 경기감독관에게 출전 선수명단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출전선수명단에는 출전 선수,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 유니폼 색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출된 인원만이 경기 출전과 팀 벤치에 착석할 수 있다.
3. 출전선수명단에 등재할 수 있는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의 수는 최대 13명(통역포함)으로 한다.
4. 선수의 출전
 - ① 출전선수명단은 20명(선발 11명, 교체 9명)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후보 골키퍼(GK)는 반드시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외국국적 선수의 경우, 4명까지 경기 출전 가능하다.
 - ④ K4리그 소속의 보충역 선수 중 원 소속팀이 K1 또는 K2 구단인 선수는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 ⑤ 보충역 선수는 평일 경기(단, 법정 공휴일 제외)에 참가할 수 없다. (2026.06.29)
- ⑥ 출전선수명단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U23선수(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최소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U23 선수가 출전 선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부족한 인원 수 만큼 출전 선수 명단 인원수가 감소한다.
- ⑦ 출전선수명단에 포함된 U23 선수 1명은 의무적으로 선발 출전해야 한다. U23 선수가 의무 선발 출전을 하지 않을 경우, 선수 교체 가능 인원은 4명으로 제한한다.

구분	U23세 출전 선수 명단 *미포함 시 교체 명단 수 감소		U23세 의무 선발 출전 *미포함 시 교체 수 감소	
	U23 포함 수	출전 제출 인원	의무선발	교체출전
K3리그 K4리그	0명	17명	0명	4명
	1명	18명	0명	4명
			1명	5명
	2명	19명	0명	4명
			1명	5명
			0명	4명
	3명	20명	0명	4명
			1명	5명

- 5. 출전선수명단 제출 후, 부상 및 불가피한 사유로 선발 출전 선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기 개시 전까지 경기감독관 승인 하에 출전선수명단의 교체 대상 선수 9명에 한하여 허용하며, 교체된 선수는 후보선수명단으로 포함되나 해당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6. 출전선수명단의 교체 선수가 출전 선수를 대신하여 경기를 시작하고, 주심이 이 변경에 대해 통보 받지 못했을 때 다음과 같이 조치하며, 해당 클럽은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 ① 주심은 그 명단의 교체 선수가 계속 플레이하는 것을 허용한다.
 - ② 그 명단의 교체선수에게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
 - ③ 출전하기로 했던 선수는 교체 선수가 될 수 없다.
 - ④ 교체허용 선수 숫자는 감소하지 않는다.
 - ⑤ 주심은 이에 대하여 협회에 보고한다.
- 7. 선수 교체가 하프타임 휴식 중 또는 연장전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그 절차는 경기가 재개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만약 주심이 교체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더라도 그 교체선수를 처벌하지 않고 플레이를 계속하도록 하며, 이에 대하여 협회에 보고한다.
- 8. 출전선수명단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여 발각되었을 때는 규정 위반으로 해당 팀은 실격으로 처리하며 협회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5조 (뇌진탕 교체)

1. 각 팀은 경기당 최대 1명의 ‘뇌진탕 교체’를 할 수 있다.
2. ‘뇌진탕 교체’는 기존 교체 선수 숫자와 무관하다.
3. 뇌진탕 또는 뇌진탕 증세로 의심되는 선수는 더 이상 경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선수대기실 혹은 의료시설로 이동해야 한다.
4. ‘뇌진탕 교체’ 사용 시 상대팀도 ‘추가 교체’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팀의 교체 사유는 ‘뇌진탕’ 증상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뇌진탕 교체’를 위해 일반 교체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팀은 추가 교체 기회가 없다.
5. ‘뇌진탕 교체’는 소속팀이 결정하며 심판진은 ‘뇌진탕 교체’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뇌진탕 교체’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심판진은 경기 종료 후 심판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6. ‘뇌진탕 교체’와 ‘추가 교체’는 협회가 지정한 교체 용지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7. ‘뇌진탕 교체’의 경우라도 외국인 선수 출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8. ‘뇌진탕 교체’된 선수의 경기 출전은 충분한 휴식과 의료 검사 및 치료를 받은 후 소속팀에서 결정한다.
9.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IFAB 경기규칙 및 ‘뇌진탕 교체’ FIFA 프로토콜 최신판을 따른다.

제16조 유니폼

1. 클럽은 참가신청 시 제출한 유니폼만을 착용할 수 있으며, 출전 선수의 유니폼, 배번은 참가 신청서와 동일해야 한다.
2. 팀 주장 선수는 주장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완장을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하여야 한다.
3. 선수의 배번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니폼 색상과 명확히 구분되는 색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4. 경기에 출전하는 클럽은 상대 클럽과 유니폼 착용 색상과 관련하여 사전 조율하여야 하고, 경기 당일 주·보조 유니폼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해당 클럽은 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된다.
5. 홈 클럽 유니폼과 원정팀 유니폼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감독관과 심판 협의 하에 양 팀의 주·보조 유니폼을 조합하여 최종 결정한다.
6. 기능성 의류(타이즈 등)를 착용하고자 할 때에는 유니폼 색상과 동일한 색상을 착용해야 하고, 테이핑 사용 시 스타킹 색상과 동일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 ① 상의 이너웨어의 색상은 유니폼 상의 소매의 주색상과 같거나, 상의 소매의 문양/색상 조합으로 정확히 복제한 것이어야 한다.



- ② 유니폼 상의 소매 부분의 주색상이 상대팀 유니폼의 주색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에는 유니폼 상의의 주색상으로 착용할 수 있다.
 - ③ 하의 이너웨어의 색상은 반드시 하의 주 색상 또는 하의 끝부분의 주색상과 동일해야 한다.
7. 벤치에 착석하는 모든 선수는 반드시 협회에서 제공하는 대회 빙스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7조 전자장비 사용

1. EPTS 장비 사용을 원하는 경우, FIFA 품질 프로그램(FIFA Quality Programme)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만 사용 가능하다.
2. 스태프는 선수의 복지와 안전, 전술적/코칭의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소형, 이동식, 휴대용 장비(마이크, 헤드폰, 이어폰,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를 사용할 수 있다.
3. 선수들(대기 선수/교체된 선수/퇴장 선수 포함)은 전자 장비를 사용하거나 착용해서는 안 된다. 단, EPTS장비는 예외로 한다.
4. 허가되지 않은 전자 장비를 사용하거나, 전자/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판정항의 시 기술 지역에서 퇴장 조치한다.

제18조 교체 선수

1. 제14조(출전 선수 명단)에 의거, 경기감독관이 승인한 출전 선수 명단에 따라 교체 대상 선수 명단(9명) 내에서 교체가 가능하다.
2. 교체 선수의 수는 정규시간(전·후반) 경기에서 5명까지 가능하다.
3. 선수 교체 횟수는 정규시간 내 최대 3회 가능하며, 하프타임 교체는 횟수에 미포함 한다.
4. 연장전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 교체횟수가 1회가 부여되고, 교체 선수를 1명 추가로 교체 할 수 있다. 또한, 정규시간(전·후반) 내에 사용하지 않은 교체 횟수 및 교체 선수 수도 연장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연장전 개시 전 교체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9조 경기의 취소 및 중지

1. 경기 전 또는 경기 중 중대한 불상사 등으로 경기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심은 경기감독관에게 경기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감독관은 동 요청에 의거하여 홈 클럽 및 원정 클럽 관계자의 의견을 참고한 후 경기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2. 다만, 관중의 난동 등으로 경기장 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관은 주심의 경기 중지 요청이 없어도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3. 강설 또는 강우 등 악천후, 천재지변, 기타 클럽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상황, 경기



장 조건, 선수단과 관계자 및 관중의 안전이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 등 경기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감독관은 경기 개최 3시간 전까지 경기개최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4. 경기 개최 3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전까지 경기 개최 지역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등에 관한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경보 발령 기준농도를 초과하는 상태인 경우, 경기감독관은 경기의 취소 또는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5. 경기감독관은 경기중지 및 취소 결정을 내린 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재경기

1. 제19조(경기의 취소 및 중지)에 의거, 경기 개최 취소 또는 중지된 경기를 「순연경기」라 하고, 순연된 경기의 개최를 「재경기」라 한다.
2. 재경기는 다음날 같은 경기장에서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그 다음날 재경기 개최가 어려운 경우, 협회가 별도 경기일을 지정한다. 기존 홈팀의 경기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외부 행사 등 홈 팀의 귀책 사유로 경기가 연기된 경우 협회에서 어웨이팀의 홈경기장으로 경기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3. 순연경기에서 양 팀의 득점 차가 있는 경우, 중지 시점에서부터 잔여시간만의 재경기를 실시한다.
 - ① 출전 선수 및 교체 선수의 명단은 순연 경기 중단 시점과 동일하여야 한다.
 - ② 선수교체 횟수와 교체인원 수는 이전 경기의 중지시점까지 사용한 횟수와 교체인원 수를 차감하여 남은 횟수와 교체 인원수만 사용할 수 있다.
 - ③ 순연 경기에서 발생된 모든 기록(득점, 도움, 경고, 퇴장 등)은 유효하다.
4. 순연경기에서 양 팀의 득점 차가 없는 경우, 전·후반 90분간 재경기를 새로 실시한다.
 - ① 출전 선수 및 교체 대상 선수의 명단은 순연 경기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 ② 선수교체 횟수와 교체인원 수는 경기에서 허용하는 최대 인원수(5명)까지 가능하다.
 - ③ 순연 경기에서 발생된 퇴장 및 경고만 유효하다.

제21조 선수,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 클럽에 대한 제재

1. 경고

- ① 경기 중 2회 경고 퇴장 : 다음 1경기 출전정지
- ② 대회 중 경고가 2회 누적된 경우 : 다음 1경기 출전정지
- ③ 경고 누적은 1라운드-결승전까지 연계 적용한다.

2. 퇴장

- ① 직접퇴장 : 다음 1경기 출전정지
- ② 경기 중 1회 경고 후 직접 퇴장 : 다음 1경기 출전정지, 경고 1회는 누적



- ③ 대회 중 1회 경고 후, 1경기 2회 경고 퇴장 : 다음 1경기 출전정지, 경고 1회는 누적
- ④ 대회 중 1회 경고 후, 1경기 1회 경고 후 직접 퇴장 : 다음 2경기 출전정지
- ⑤ 직접 퇴장의 경우, 퇴장사유에 따라 공정소위원회에서 추가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 3. 대회 기간 중 타 클럽으로 이적 시에도 경고, 퇴장(누적 포함)은 연계 적용된다.
- 4. 대회에서 경고누적에 의한 출전정지 및 퇴장에 의한 출전정지는 선수,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 동일하게 적용한다.
- 5. 무자격 선수가 경기에 출장한 것이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발각되어 경기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상대 클럽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클럽이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상대 클럽이 3골차 이상으로 승리했거나 이기고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스코어를 그대로 인정한다.
- 6. 클럽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경기 진행이 불가할 경우, 해당 경기는 상대팀의 3:0 승으로 처리하며, 귀책사유가 있는 클럽은 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된다.
- 7. 벤치 이외의 장소에서 팀을 지도한 지도자는 협회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 8. 경기 중에 경기를 중단시키는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는 퇴장 조치하고, 협회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 9.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무단 입장, 시설물 파손, 폭력, 폭언 등 질서를 위반한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와 선수는 즉시 퇴장 조치하고, 해당 클럽은 실격될 수 있으며 협회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 10. 경기 중 심판 판정 또는 기타 사유로 경기장 이탈, 지연, 경기에 불응한 경우, 경기감독관으로부터 공식 경기 재개 통보를 받은 후 3분 이내에 경기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경기포기로 간주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클럽은 협회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 11. 경기 및 경기와 관련된 제반 사항(지도자, 선수,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 심판, 기타 관계자 포함)에 대해 경기감독관은 영상 또는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으며, 경기감독관의 촬영을 방해하는 경우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 12. 경기 종료 후, 심각한 반칙 행위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협회는 해당 관계자(선수,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 및 클럽)에 대하여 추가 징계를 할 수 있다.
- 13.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 및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협회에서 판단하여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 14. 공정소위원회 징계로 인한 출전정지는 시즌 및 대회에 관계없이 연계 적용한다.
- 15. 클럽은 소속 선수,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에 대한 경고 누적, 퇴장, 징계에 대하여 숙지할 의무가 있으며, 경고, 퇴장, 징계 등에 따라 출전이 정지된 선수, 코칭스태프, 팀 스태프의 출전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해당 클럽에 있다.
- 16. 출전이 정지된 자의 징계수위별 경기 중 활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활동		구분	
		선수	코칭스태프
경기 전일	공식기자회견	불가	가능
경기 당일	필드 (터널, 팀벤치 등)	불가	불가
	테크니컬 시트	불가	불가
	선수대기실	불가 (경기 종료 후 가능)	불가 (경기 종료 후 가능)
	미디어 활동 (플래쉬 인터뷰, 믹스트존 등)	불가	불가
	경기 중 팀과의 원격소통 (무전기, 휴대폰 사용 등)	불가	불가
	시상식	가능	가능

제22조 제소

1. 규정 위반, 불미스러운 행위 등 경기와 관련한 제소는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클럽 명의 공문과 관련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2. 경기 중의 제소는 허용하지 않는다.
3.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불가하다.
4. 사실무근으로 제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협회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3조 안전 및 질서 유지

1. 홈 클럽은 경기개시 2시간 전부터 경기종료 후 선수단, 심판을 비롯한 관중, 모든 관계자가 퇴장할 때까지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2. 홈 클럽은 관중, 선수단, 심판, 대회 관계자 등의 안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며, 경기장 안전시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홈 클럽은 선수단, 심판, 관중 및 모든 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소속된 리그의 기준에 맞춰 아래의 안전 사항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
 - 응급 구조 인력 : 의료진(의사, 간호사, 응급 구조사 등)
 - 응급 구조 차량 : AED 및 산소호흡기 비치된 구급차량, 예비용 차량
4. 홈 클럽은 상대 클럽의 응원단을 위하여 전용출입문, 화장실 등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관중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5. 경기 중 앰프(전자 음향기기 일체), 각종 호각류, 기타 적절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한 응원 및 관중의 난입 등으로 인해 경기진행 및 관중, 선수단 및 심판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클럽에 있으며, 해당 클럽은 협회 공정소위원회



에 회부한다,

6. 대회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전염병 등의 발병 또는 발병이 우려될 경우 협회는 안전을 위해 모든 참가 클럽에 전수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해당 클럽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7. 선수단 안전을 위하여 ‘쿨링 브레이크’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 ① 혹서기 기온상승에 따라 WGBT(체감 온도 지수) 30℃ 전, 후일 경우 진행할 수 있다.
 - ② 경기감독관 및 해당경기의 심판진이 본 제도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팀에 통보한다.
 - ③ 전후반 각 1회씩 경기개시 후 30분 전후 아웃 오브 플레이 시 시행함을 권장하며, 휴식 시간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 사용구 및 지원

1. 대회 공식 사용구는 스타스포츠의 ‘폴라리스 NX7000’를 사용한다.

제25조 시상

대회의 단체상 시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단체상

대회	구분	시상내역	비고
K3K4 챔피언십	우승	상금 3천만원, 메달, 트로피	
	준우승	상금 1천만원, 메달, 상패	

2. 개인상

구분	시상내역	비고
지도자상	상금 1백만원, 트로피	
득점상	상금 1백만원, 트로피	
최우수선수상(MVP)	상금 1백만원, 트로피	

- ① 지도자상은 우승팀의 감독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득점상은 대회 중 3골 이상 득점한 선수에 한하여 시상하며, 득점 기록이 동일한 선수가 다수일 경우 출전경기가 적은 선수 → 출전시간이 적은 선수 순에 따라 결정한다.
- ③ 최우수선수상(MVP)은 협회에서 결정한다.
- ④ 대회 기간 중 퇴장(경고누적에 의한 퇴장은 제외) 이상의 징계를 받은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 및 선수는 경중에 따라 시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6조 홈경기 운영



1. 모든 경기는 홈 클럽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홈 클럽은 원활한 경기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회의 지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홈 클럽은 경기장의 각종 시설 및 조명 등을 사전 점검·보완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홈 클럽은 경기 개최 시 원활한 경기를 위하여 홈경기 관리책임자를 선정하고, 홍보담당, 마케팅 담당, 시설담당, 안전담당, 의료담당 등을 각각 구성하여야 한다.
4. 홈 클럽은 경기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경기 시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을 제공하고, 인력 등을 운영해야 한다.
5. 경기장은 다음의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협회의 경기장 실사 후 대체 시설로 보완할 수 있다.

① 운영본부

② 양 팀 선수대기실, 심판 대기실, 경기감독관 대기실

③ 팀 벤치 (20석 이상) 및 대기 심판 벤치 (최대 4석) 시설

④ 경기감독관석 및 심판감독관석 (전기, 프린터, 인터넷회선 필수 설치)

⑤ 음향시설(장내 방송을 위한 시스템 및 방송실 등) 및 장내 아나운서석

⑥ 의료진 벤치 및 의무실 (필요시 도핑 검사실 추가 설치)

⑦ 기자회견실, 기자실 및 사진 기자실 (사진전송 가능 설비)

⑧ 기자석 (노트북 등이 설치 가능한 테이블 필수 설치)

⑨ TV 중계 관련 제반 설비 (설치 공간 등)

⑩ 경찰 대기실 및 소방 대기실

⑪ 영상시설 (득점, 시간, 영상 송출을 위한 전광판 등)

⑫ 조명시설, 계양대

⑬ RVIP석, VIP석, 스카이박스 등

⑭ 관중석 (각 팀의 소속 리그 규정에 따름)

⑮ 주차시설

⑯ 기타 협회가 요구하는 시설 및 장비 등

제27조 원정 클럽을 위한 관객석 확보

1. 홈 클럽은 원정 클럽을 응원하는 관중을 위한 전용 좌석(이하 '원정응원석')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원정응원석의 수량은 경기장 전체 좌석수의 5% 이상으로 한다.
3. 원정 클럽은 경기 개최 일주일 전까지 홈 클럽에 원정응원석의 수량, 위치 정보의 제공 및 추가 좌석 확보를 요청할 수 있고, 홈 클럽은 원정 클럽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원정응원석은 그라운드와 가까운 좌석부터 배정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관전시야, 밀집도, 기타 관람 편의를 다른 좌석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
5. 원정응원석 가격은 같은 조건의 다른 좌석보다 높게 책정되어서는 안 된다.

제28조 도핑

1. 도핑방지 규정은 선수의 건강보호와 공정한 경기 운영을 위함이며, 등록지도자 및 선수는 한국 도핑방지위원회[이하 “KADA”]의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2. 대회 기간 중 KADA에서 시행하는 도핑검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3. 치료를 위해 금지약물을 사용할 경우, 치료목적사용면책(이하‘TUE’) 신청서를 경기 출전 20 일 전까지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4. 협회 등록팀 소속 선수 및 관계자(감독, 코치, 트레이너, 팀 의무,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는 도핑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규정에 따른 도핑검사 절차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여할 수 없다.
5. 도핑검사 후 금지약물이 검출된 경우 KADA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되며,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9조 마케팅

1. 본 대회와 관련한 사업 및 마케팅 관련 사항은 ‘2026 K3·K4리그 마케팅 규정’을 따른다.

제30조 클럽의 정치적 중립성

1. 클럽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 정치인, 정치 세력 또는 정치적 이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클럽은 클럽의 명의, 휘장(엠블럼), 시설물 등을 사용하거나 클럽 관계자(구단주, 지도자, 선수, 임직원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거나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클럽은 경기, 훈련, 공식 행사 등 클럽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활동 영역에서 정치적 목적의 발언 또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표현하는 게시물을 게시 또는 노출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협회의 '경기장 내 선거운동 및 게시물 관련 지침'을 준수한다.
4. 클럽은 소속 구성원클럽 관계자 및 관중이 본 조를 준수하도록 예방 교육 및 현장 관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반하거나 관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 ① 구단주, 지도자, 선수 등 협회에 등록된 사람은 협회 공정위원회에 회부
 - ② 기타 클럽 임직원 등은 자체 인사위원회 등에 회부한 후 그 결과를 협회에 보고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클럽 및 관련자를 징계한다.

5. 클럽은 지지체 등 제3자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협회는 보고된 사안에 대해 해당 클럽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1조 기타 사항

1.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경기 개시 90분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경기 개시 15분 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은 팀은 기권으로 간주한다.
2. 경기 중 팀 지도는 출전 선수 명단에 기재된 지도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3. 징계 중인 지도자는 지도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하였을 시 협회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4. 경기 중, 교체대상 선수의 워밍업은 협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해야 한다.
5. 경기시작 전 사안에 따라 경기감독관 주최 하에 관계자 미팅을 실시할 수 있다.
6. 참가클럽은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임해야 하며, 승부조작 등 어떠한 부정행위에 관여하거나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7. 본 대회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의 관련 규정, AFC, FIFA의 정관 및 IFAB 경기 규칙서에 따라 대한축구협회에서 결정한다.



KFA
Korea Football
Association

K3.K4리그 클럽라이선스 규정

Play ON



목 차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적용범위
- 제4조 자격부여주체

제2장 클럽자격부여기준

- 제5조 기준의 의미 등

제1절 스포츠기준

- 제6조 스포츠기준 설명
- 제7조 선수 등록
- 제8조 선수 계약
- 제9조 선수들에 대한 의료지원
- 제10조 유소년 육성프로그램
- 제11조 유소년 팀의 조직
- 제12조 교육 참여

제2절 시설기준

- 제13조 시설기준 설명
- 제14조 경기장 소유
- 제15조 경기장 시설
- 제16조 훈련시설
- 제17조 경기장 안전 규칙

제3절 인사 및 행정기준



제18조 인사 및 행정 기준의 설명

제19조 클럽사무국

제20조 클럽 임직원

제21조 클럽 코칭스태프

제22조 클럽과 클럽관계자 사이의 권리·의무의 명확성

제23조 클럽과 클럽관계자 사이의 계약변경 등

제24조 시즌 중 클럽관계자의 변경

제4절 법적기준

제25조 이행확인서 등

제26조 클럽의 지배구조

제27조 문서의 제출

제28조 징계규정 및 행동 강령

제29조 법률담당자 및 자문

제5절 재무기준

제30조 재무기준 설명

제31조 재정건전성 확보

제32조 연간재무제표 및 회계감사

제33조 이행지체 된 보수 및 세금

제34조 미래재무정보

제3장 자격부여기관 등

제35조 클럽자격업무 담당부서

제36조 의사결정 기구 구성 및 자격

제37조 클럽자격심의위원회

제38조 클럽자격재심위원회

제4장 지원클럽의 자격 및 의무사항 등



제39조 지원클럽의 자격

제40조 자격증의 발급, 유효기간, 양도 및 취소

제5장 절 차

제1절 심사절차

제41조 신청절차

제42조 심사 및 결정

제2절 재심절차

제43조 재심신청권자 등

제44조 재심신청절차 및 신청기간

제45조 불가쟁력

제6장 징 계

제46조 징계의 종류

제47조 징계의 결정

제48조 징계의 절차

제7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국내대회의 적용

제3조 제 1절 7조 ‘선수 계약’ 조항 미충족 클럽에 대한 경과 조치

제4조 제 1절 10조 ‘유소년 팀의 조직’ 조항 미충족 클럽에 대한 경과 조치

제5조 제 4절 33조 ‘클럽의 지배구조’ 미충족 클럽에 대한 경과 조치

제6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2019. 08. 30. 제정
2021. 02. 15. 개정
2021. 12. 14. 개정
2024. 11. 12. 개정
2025. 09. 02.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K3·K4리그의 참가자격 및 자격의 부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① 「리그」는 대한축구협회가 주최/주관하는 K3리그와 K4리그를 말한다.
- ② 「참가자격」은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및 리그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을 말한다.
- ③ 「클럽라이선싱 기준」은 리그 참가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클럽이 준수해야 하는 5개의 카테고리 (스포츠기준, 시설기준, 인사 및 행정기준, 법적기준, 재무기준)로 구성된 요건을 말한다.
- ④ 「필수기준」이라 함은 K3리그/K4리그를 참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으로, 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리그에 참가할 수 없는 기준을 말한다.
- ⑤ 「기본기준」이라 함은 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리그 참가는 할 수 있으나 협회로부터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 ⑥ 「권장기준」이라 함은 축구의 발전을 위하여 클럽이 지향해야 하는 기준으로 협회로부터 제재가 부과되지 않는 기준을 말한다.
- ⑦ 「클럽」이라 함은 본 규정에 의하여 K3리그/K4리그 참가자격을 신청하는 축구팀에 대한 책임을 갖는 법인체를 말한다.
- ⑧ 「클럽자격심의회」, 클럽의 리그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의사결정기구로써 1심 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⑨ 「클럽자격재심위원회」, 클럽의 리그 참가자격 부여 결정을 대한 재심 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⑩ 「클럽관계자」라 함은 본 규정의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에 명시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참가자격을 유지하고 K3/K4리그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존 참가 클럽과 K4리그에 신규 참가를 희망하는 클럽에게 적용한다.

제4조 자격부여주체

본 규정에 의거 협회는 클럽 라이선싱 제도를 운영하고 리그 참가자격을 부여한다.

제2장 클럽자격부여기준

제5조 기준의 의미 등

- ① K3/K4리그 참가 자격 취득을 위해 클럽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은 다음 5가지 기준으로 분류된다.
 - 1. 스포츠기준
 - 2. 시설 기준
 - 3. 인사 및 행정기준
 - 4. 법적기준
 - 5. 재무기준
- ② 6조부터 33조까지 정의된 기준은 K3/K4리그 참가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클럽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며, “필수기준, 기본기준, 권장기준”으로 구분된다.

제1절 스포츠기준

제6조 스포츠기준 설명

클럽은 우수 선수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수 계약, 의료 지원서비스 제공, 선수(유소년 포함)육성에 대한 세부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선수 등록 (필수기준)

클럽의 모든 선수는 협회 및 리그에 등록되어야 한다.

제8조 선수 계약 (필수기준)



- ① 클럽은 클럽 소속으로 협회에 등록하는 모든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클럽과 선수간의 계약은 연봉계약과 수당계약으로 구분한다.
- ② 클럽과 선수의 계약 관련 세부 사항은 「K3·K4리그 선수 계약 세칙」에 의거한다.
- ③ K3리그 클럽은 최소 20명 이상의 선수와 연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④ K4리그 클럽은 최소 5명 이상의 선수와 연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연봉계약 선수 수는 아래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구분(시즌)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선수 수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 ⑤ K3리그로 승격한 클럽의 경우, 승격 연차에 따라 아래 최소 인원수에 해당하는 선수와 연봉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한다.

구분(시즌)	1년차	2년차	3년차
2029년까지	10명	15명	20명
2030년부터	15명	20명	-

- ⑥ 외국국적 선수는 제3항과 제4항의 최소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 선수들에 대한 의료지원 (필수기준)

클럽은 클럽에 등록된 모든 선수들에게 매년 심혈관 검사가 포함된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클럽은 선수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10조 선수(유소년) 육성 프로그램 (기본기준)

- ① 클럽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선수 육성 프로그램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선수(유소년 포함) 육성의 목적 및 철학
 2. 유소년 팀의 조직도, 예/결산 현황
 3. 유소년 팀 관리 담당자(지도자, 의료담당자, 관리자 등)들의 현황 및 업무 분장 등
 4. 유소년 육성을 위한 시설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훈련시설 등
 5. 축구 교육 프로그램 (기술, 전술, 체력 등)
 6. 교육 프로그램 (경기규칙, 심판교육, 부정방지, 교육계획 등)

제11조 유소년 팀의 조직 (필수기준)

- ① 클럽은 반드시 아래 연령대 중 최소 하나의 전문 축구 유소년 팀을 보유하여야 한다.



1. 18세 이하로 구성된 유소년 팀 (이하 “U18 팀”)
2. 15세 이하로 구성된 유소년 팀 (이하 “U15 팀”)
3. 12세 이하로 구성된 유소년 팀 (이하 “U12 팀”)
4. 제1항의 각 유소년 팀은 매년 협회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협회가 주최하는 리그 및 공식 대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5. 신규 클럽은 유소년 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리그 참가 다음 시즌 리그가 시작되기 전까지 반드시 유소년 팀을 보유해야 한다.

제12조 교육 참여 (필수기준)

- ① 클럽은 소속 선수 및 모든 코칭스태프가 협회 또는 협회가 지정한 단체에서 실시하는 아래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IFAB 경기규칙
 2. 도핑방지
 3. 부정 방지
 4. 기타 협회가 요구하는 교육 (안전교육 등)
- ② 클럽은 사무국 대상으로 협회 또는 협회가 지정한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시설기준

제13조 시설기준 설명

클럽은 리그 홈경기를 개최하기 위해 「K3·K4리그 경기장 운영 세칙」에 따라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경기장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 경기장 소유 등 (필수기준)

- ① 클럽은 연고지역 내 K3.K4리그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경기장을 소유하거나, 다음 시즌 리그 경기를 위해 경기장 사용이 보장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경기장 사용 협약서, 서면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경기장은 제15조 경기장 시설(필수기준) 및 「K3·K4리그 경기장 운영 세칙」에 명시된 요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③ 경기장은 클럽이 연고지로 승인받은 지역 관할 범위 내(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해야 하



며, 연고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협회의 특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경기장 시설 (필수기준)

- ① 클럽은 경기장이 법률에 의거한 시설인지에 대한 여부 및 법령에 정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협회가 요청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클럽의 경기장은 아래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K3리그 / K4리그 좌석 수 1,000이상
 - 2. 천연잔디 또는 협회의 인증을 받은 인조잔디
 - 3. 1,000lux 이상 조도를 가진 조명시설 설치
 - 4. K3· K4리그 경기장 운영 세칙 내 요구 조건
- ③ 상기 2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협회의 특별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훈련시설 (필수기준)

- ① 클럽은 연고지역 내 연중 상시 사용 할 수 있는 훈련시설을 소유하거나, 사용이 보장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② 클럽은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산하 유소년 팀이 훈련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훈련 시설에는 선수대기실 및 기타 편의 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17조 경기장 안전 규칙 (기본기준)

- ① 클럽은 경기장 안전 규칙을 마련하여, 관중들이 확인 할 수 있도록 경기장에 게시해야 하며, 이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입장 허가 기준
 - 2. 경기 취소 또는 연기에 관한 사항
 - 3. 그라운드 난입, 이물질 투척, 욕설 및 인종차별 행위 등의 금지 및 위반에 대한 제재
 - 4. 흡연, 음주, 화약류 사용 등에 대한 제재
 - 5. 위험 예방을 위한 좌석 규칙
 - 6. 관중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기타 사항

제3절 인사 및 행정 기준



제18조 인사 및 행정 기준의 설명

클럽은 클럽의 발전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 지식, 경력,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 클럽사무국 (필수기준)

- ① 클럽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춘 사무국을 설치하고, 숙련된 사무국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클럽은 원활한 행정 업무를 위해 각 분야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 할 수 있는 사무국 인원을 다음 인원 수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클럽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춘 사무국을 설치하고, 숙련된 사무국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구분	K3리그	K4리그
사무국 인원수	대표(또는 단장), 사무국장 포함 6명 이상	대표(또는 단장), 사무국장 포함 4명 이상

- ③ 클럽은 사무국 정보(위치, 임직원 명단, 사무국 조직도 및 업무 분장 현황 등)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클럽은 상기2항의 요구된 최소 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구체적인 총원 일정과 대상자를 명시한 인력 총원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인력을 반드시 총원하여야 한다.

제20조 클럽 임직원 (필수기준)

- ① 클럽은 사무국 내 각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인력을 반드시 고용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한 명이 여러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 1. 대표이사(또는 단장) : 클럽의 전체 경영과 운영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대표이사(단장)을 선임
 - 2. 사무국장 :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
 - 3. 재무담당 : 재무업무를 담당하며, 구단은 의무적으로 재정보증보험 가입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예방 대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 4. 안전담당 : 안전 및 보안업무를 담당자
 - 5. 미디어담당 : 미디어 업무를 책임지는 담당자
 - 6. 의료지원담당 : 선수단에 대한 의료지원 및 도핑방지정책을 책임지는 의료지원담당자
 - 7. 마케팅 담당 : 클럽의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전반적인 마케팅 업무 담당
- ② 제1항의 3호부터 7호까지의 각 업무 분야에 대해 관련 자격을 갖춘 외부 단체나 개인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협회는 추후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21조 클럽 코칭스태프 (필수기준)

- ① 클럽은 경기 및 훈련에 대한 경력, 기술, 유효한 자격증을 보유한 아래의 인력을 반드시 코칭스태프로 고용해야 한다.
- ② 클럽이 고용한 각 코칭스태프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협회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 1. 의무 트레이너
 - I. 경기 및 훈련 중 선수들의 부상 예방 및 재발에 책임을 지며, 다음 자격을 소지한 자는 소속 클럽의 모든 경기에 반드시 벤치에 착석해야 한다.
 - II. 의무트레이너의 자격 요건은 다음 항목 중 하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가. 국가공인 물리치료사 (보건복지부)
 - 나. 건강운동관리사 (국민체육공단)
 - 다. 선수트레이너(사단법인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사단법인 한국선수트레이너협회)
 - 라. 운동처방사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
 - III. 협회 의무분과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의무 트레이너의 자격 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 2. 클럽 감독
 - I. 감독은 축구팀의 전술적, 기술적 등 축구 분야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지도자로서,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가. AFC A급 이상의 지도자 자격이 있는 자
 - 나. AFC로부터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다. 협회로부터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3. 클럽 코치
 - I. 코치는 축구팀의 전술적, 기술적 등 축구 분야 전반에 대한 감독을 지원하는 지도자로서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가. AFC B급 또는 GK 레벨2 이상의 지도자 자격이 있는 자
 - 나. AFC로부터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다. 협회로부터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4. 유소년팀 감독
 - I. 유소년팀 감독은 제11조에 명시된 유소년 팀의 축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도자로서, 협회 등록 규정에 명시된 연령대별 감독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22조 클럽과 클럽관계자 사이의 권리·의무의 명확성 (기본기준)

클럽은 제20조 및 제21조에 해당하는 자들을 채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협회 요청 시 해당 계약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클럽과 클럽관계자 사이의 계약 변경 등 (기본기준)

클럽은 제20조 및 제21조에 해당하는 자들의 계약서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된 계약서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시즌 중 클럽관계자의 변경 (기본기준)

- ① 클럽은 제20조 및 제21조에 해당되는 자들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계약 작성 후 14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② 클럽은 제20조 및 제21조에 해당되는 자들의 변경 사항을 협회에 보고하는 것과 별도로, 각 클럽의 책임 하에 협회 등록 사이트에도 등록해야 한다.

제4절 법적기준

제25조 이행확인서 등 (필수기준)

- ① 클럽은 협회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이행 확인서 및 정보 요구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② 클럽은 협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해당 문서에 서명하고 제출해야 한다.
- ③ 클럽은 제1항의 내용을 선수, 지도자, 클럽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제26조 클럽의 지배구조 (필수기준)

- ① 리그에 참가하는 클럽은 독립된 법인 형태로 참가해야 한다.
- ② 클럽은 협회에 클럽의 지배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배구조에 변동이 있을 때는 변동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빙 문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③ 클럽은 독립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지배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리그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 1. 클럽 또는 클럽의 주주, 임직원이 동일한 대회 또는 리그에 참가하는 다른 클럽의 경영, 행정, 또는 스포츠 성과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나 증권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 2. 클럽 또는 클럽의 주주, 임직원이 동일한 대회 또는 리그에 참가하는 다른 클럽의 주식이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3. 클럽 또는 클럽의 주주나 임직원이 동일한 대회 또는 리그에 참가하는 다른 클럽의 경영, 행정 또는 관리기구의 구성원 과반수이상을 고용,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가지는 경우
4. 클럽 또는 클럽의 주주나 임직원이 동일한 대회 또는 리그에 참가하는 다른 클럽의 주주나 임직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클럽 주주나 임직원의 투표권 50% 이상을 독자적으로 통제하거나 다른 클럽의 주주가 되는 경우
5. 클럽의 구성원이 동일한 대회 또는 리그에 참가하는 다른 클럽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
6. 기타 클럽 또는 그 클럽의 주주나 임직원이 동일한 대회 또는 리그에 참가하는 다른 클럽의 경영, 행정 또는 스포츠적 성과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27조 문서의 제출 (필수기준)

- ① 독립 법인 형태로 구성된 클럽은 협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클럽 내규(운영규정, 징계규정 등)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명, 클럽명, 사무소 주소, 법인 종류, 대표이사나 대표자 포함)
 4. 법인 인감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5. 주주 명부 (또는 회원/사원 명부)
 6. 제20조 및 제21조에 해당하는 자들과 체결한 계약서
 7. 이행확인서
 8. 정보 요구 및 이용 동의서

제28조 징계규정 및 행동 강령 (필수기준)

- ① 클럽은 관련 법률 및 FIFA, AFC,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여, 선수단(선수 및 스태프)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유효한 행동 규범을 마련하고, 구성원들에게 적용될 징계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 ② 징계규정에는 준수 사항, 제재, 징계 절차가 명시되어야 한다.
- ③ 행동 규범은 클럽 규칙 및 클럽 규정 위반 시 적용되는 징계규정을 통하여 보완 되어야한다.

제29조 법률담당자 및 자문 (권장기준)

- ① 클럽은 법적 분쟁 예방 및 해결, 법률 교육을 위한 법률전문가를 지정해야 한다.
- ② 클럽은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절 재무기준



제30조 재무기준의 설명

클럽은 재무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투자자의 유치를 이끌어내어 축구산업이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재정건전성 확보(필수기준)

- ① 클럽을 창단하는 경우, 클럽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 1. 연고지 지자체로부터 예산의 80%이상의 재정지원 확보
 - 2. 재정 지원 기업들의 연 매출 합계가 200억원 이상(최근 3년간) 충족 및 연고지 지자체로부터 예산의 20%이상의 재정지원 확보
 - 3.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으로부터 예산의 90%이상 재정지원을 확보한 경우
 -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에서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
- ② 위 1항의 구단 운영을 위한 최소 예산액은 매년 협회에서 별도 책정하여 신규팀 신청 접수시 안내한다.

제32조 연간재무제표 및 회계감사 (필수기준)

클럽은 매년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에 의해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이행지체 된 보수 및 세금 (필수기준)

- ① 클럽은 당해 연도 전·현직 피고용인(FIFA RSTP에 정의된 선수 및 클럽라이선싱 규정“인사 및 행정 기준”에 의거하여 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인원)에 대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의무와 관련된 모든 지급금이 연체되지 않았음을 증빙해야 한다. 만약 지급금이 연체된 경우, 다음 연도 1월 2일까지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여 이를 증빙해야 한다.
 - 1. 미지급금 전액 상환 내역
 - 2. 채권자와 양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완전히 해결 또는 지급기한 연기
- ② 클럽은 모든 적절한 방식을 통해 피고용인 및 관공서에 대한 지급금이 연체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제34조 미래재무정보 (기본기준)

- ① 클럽은 클럽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미래 재무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클럽은 미래재무정보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전년도 예산 실적



2. 차년도 예산서

- ③ 클럽이 제출한 전년도 예산 대비 실적이 현저히 상이할 경우, 협회는 이를 자격 부여 심사의 자료로 평가할 수 있으며, 차기년도 예산서가 재무적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자격 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클럽의 재무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클럽은 반드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자격부여기관 등

제35조 클럽자격업무 담당부서

- ① 협회는 클럽자격 부여 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담당부서를 운영한다.
- ②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클럽 라이선싱 제도의 준비, 실행 및 향후 발전 방안 수립
 - 2.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행정 지원 제공
 - 3. 리그의 참가 자격을 부여받은 클럽에 대한 지원, 자문 및 모니터링
 - 4. 필요시,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한 평가 보고서 작성
- ③ 담당부서는 업무 처리 중에 얻은 클럽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제36조 의사결정기구 구성 및 자격

- ① 협회는 아래 두 개의 의사 결정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 1. 클럽 자격 심의위원회 (1심 기구)
 - 2. 클럽 자격 재심위원회 (재심 기구)
- ② 의사 결정 기구는 클럽에 대한 참가 자격 부여를 결정하고, 규정에 명시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③ 의사결정기구의 인원은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 한다.
- ④ 의사결정기구의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은 임기 중 교체 또는 총원이 가능하다.
- ⑤ 의사결정기구의 위원은 엄격한 기밀 유지를 준수해야 한다.
- ⑥ 클럽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과 클럽자격재심위원회의 모든 위원(위원장 포함)은 협회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 ⑦ 대회위원장, 기술본부장, 대회운영본부장, 협회 내부 변호사(1인)은 클럽자격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클럽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계사 및 외부 인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 ⑧ 클럽자격재심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가 외부 인원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
- ⑨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 클럽자격심의위원회

- ① 클럽자격심의위원회는 클럽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아래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1. 클럽의 참가 자격 승인 또는 미승인
 2. 라이선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클럽에 대한 제재
 3. 클럽의 참가 자격 취소
- ② 클럽자격심의위원회는 클럽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거나 자료의 재제출 또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클럽의 참가 자격 미승인, 취소 또는 제재 부과 시, 해당 결정은 사유를 포함하여 클럽에게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 ④ 재심 청구 기한까지 클럽자격심의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 ⑤ 본 규정에 명시된 제출 요구 서류의 미제출 또는 협회가 설정한 마감일 이후 제출에 따른 참가 자격 불승인 시, 클럽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재심 대상이 아니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이 출석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최종결정권을 가진다.

제38조 클럽자격재심위원회

- ① 클럽자격재심위원회는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클럽의 참가 자격 승인 또는 철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 ② 클럽자격심의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재심청구인이 기한 내에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위원회는 클럽자격심의위원회 결정을 재심사하여 해당 결정을 유지하거나, 필요시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③ 재심위원회는 클럽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서류 및 증거만을 참고한다.
- ④ 재심 신청서는 본 규정 제43조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이 출석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최종결정권을 가진다.

제4장 지원클럽의 자격 및 의무사항 등

제39조 지원클럽의 자격

클럽은 국내 축구대회(리그)에 참가하는 축구팀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는 법인 형태로 협회에 등록



된 클럽 및 등록 예정 클럽으로 한다.

제40조 자격증의 발급, 유효기간, 양도 및 취소

- ① 협회는 클럽자격심의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에서 클럽 자격 승인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가 자격 부여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② 협회는 본 규정 6조부터 33조까지 명시된 각 기준 내용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클럽이 제출한 서류와 필요시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한다.
- ③ 리그 참가 자격은 한 시즌에 한해 유효하며, 사전 통지 없이 만료 된다.
- ④ 클럽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클럽이 부여받은 자격은 클럽자격심의위원회 또는 클럽 자격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1. 클럽자격부여 후 본 규정 제2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단기간(3개월) 내 개선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클럽이 파산, 특별청산, 회생 또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클럽이 합병, 분할, 사업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양도할 경우
 4. 기타 법원의 결정 등 클럽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클럽이 협회 정관에 의거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⑤ 클럽은 부여받은 참가 자격을 제3자(타 클럽이나 단체)에 양도할 수 없다.
- ⑥ 자격을 부여 받은 클럽은 시즌 중에 클럽의 운영 주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시즌 라이선스 신청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5장 절 차

제1절 심사절차

제41조 신청절차

- ① 38조에 명시된 클럽만이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클럽은 자격부여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 ③ 협회는 자격부여신청 절차, 주요평가 과정 및 진행계획 등을 클럽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클럽은 리그 참가를 위해 협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자격 부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⑤ 협회는 클럽이 제출한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2주 이내에 해당 클럽에게 서류의 재제출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협회는 클럽이 서류 준비 등의 사정으로 신청 기간 종료일까지 신청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7일의 이내에서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 심사 및 결정

- ① 협회는 모든 클럽에 대해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 ② 협회는 클럽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 시 기 제출된 서류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클럽의 관련 시설에 대해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클럽은 협회의 자격심사와 관련해서 협회 등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협회는 참가자격 결정을 위한 클럽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자격부여 여부와 징계 여부 등을 결정 하여야 한다.

제2절 재심절차

제43조 재심신청권자 등

- ① 클럽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만 신청할 수 있다.
 1. 자격부여 신청이 기각된 자
 2. 자격 취소 결정을 받은 자
 3. 자격은 인정되나 별도의 징계를 받은 자
 4. 결정이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재심을 통해 결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이 있는 경우
- ② 클럽의 재심신청은 청문 절차 실시 전까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재심이 철회된 경우, 클럽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제44조 재심신청절차 및 신청기간

- ① 재심청구인은 1차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협회에 서면으로 재심 청구 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청구된 재심에 대해서 추가적인 신규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 ② 제①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서류 등은 재심에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
- ③ 재심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작성하고, 작성일자 기입 및 서명 후 제출해야 한다.
 1. 클럽자격심의위원회 결정 중 재심 청구 사항
 2. 재심 청구 사유
 3. 재심 청구 사유를 뒷받침하는 서류 또는 근거자료
- ④ 재심 청구 접수시, 협회(담당부서)는 즉시 심의 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재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클럽자격재심위원회는 클럽에게 충분한 진술 시간을 주어야 한다.
- ⑥ 클럽자격재심위원회 결정은 재심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재심결정을 내려야 하며, 결과와 사유



를 명확히 기재하여 재심청구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제45조 불가쟁력

클럽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이 없거나 재심이 결정되면 이에 대하여 다룰 수 없다.

제6장 징 계

제46조 징계의 종류

① K3.K4리그 클럽 라이선싱 규정을 위반(서류 미제출, 허위 서류 제출, 제출 기한 미준수, 의사결정기구 또는 사무국의 협조 미이행, 라이선싱 기준 미충족 등)한 경우, 클럽 또는 신규 참가를 희망하는 클럽을 대상으로 클럽자격심의위원회 또는 클럽자격재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 경고
2. 벌금
3. 승점감점
4. 무관중 경기
5. 홈경기 개최 금지
6. 중립지역 경기
7. 신규 선수 영입 금지
8. 자격정지
9. 하위리그 강등
10. 자격박탈
11. 이행보증금 납부 (이행보증 보험증권 등)
12. 보충역(군대체선수) 선수 등록 금지
13. 상금 / 지원금 지급 보류
14. 협회 공정소위원회 또는 공정위원회 회부

② “클럽 라이선싱 기본 기준’ 불이행 시, 최소 제재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위반행위	최소 제재 기준
1	‘기본 기준’ 2개 이내 미이행	경고
2	경고 후, 연속 동일 ‘기본 기준’ 미이행	클럽자격심의위원회 회부
3	‘기본 기준’ 3개 이상의 미이행	클럽자격심의위원회 회부

제47조 징계절차



- ① 징계 절차 및 관련 사항은 본 규정과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② 본 조항은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 ③ 클럽자격심의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의는 본 규정에서 정한 ‘클럽 라이선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클럽에 대해 제재를 결정한다.
- ④ 클럽이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 클럽자격심의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의는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추가 제재 결정을 위해 이를 공정위원회의에 회부 할 수 있다.
- ⑤ 사안이 중대하여 공정위원회의에 회부 될 경우,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를 거쳐 제재를 결정한다.
- ⑥ 제재결정기구의 결정사항은 클럽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 징계의 결정

- ① 본 규정을 포함한 협회의 규정 또는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협회는 클럽 및 자격을 부여 받은 팀을 징계를 할 수 있다.
- ② 클럽 및 자격을 부여 받은 팀에 대한 제재의 종류, 형태 및 범위는 제45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③ 제재의 결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1. 본 규정 위반의 성격 및 심각성
 2. 동일 시즌 또는 직전 시즌부터 2회 연속으로 규정 위반이 반복된 경우
 3. 규정 위반이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경우, 가중처벌 적용 여부
 4. 과거에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경고, 교육 또는 제재가 있었는지 여부
 5.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재
 6. 제재 경감 또는 강화 사유, 기타 제재와 관련하여 적절히 검토해야 할 사안
- ④ 클럽이 2개 이상의 라이선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장 심각한 위반 사안을 기준으로 제재를 결정하며, 해당사유에 따라 제재는 강화될 수 있다.

제7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1. 본 규정은 2019년 8월 30일 개최된 협회 이사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21년 2월 15일 개정되었다.
2.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본 규정은 2021년 12월 1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클럽자격심위원회 의결사항(2021년 10월 5일)을 승인하고 개정되었다.
4. 본 규정은 2024년 11월 1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개정되었다.

5. 본 규정은 2025년 9월 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개정되었다.

제2조 국내대회의 적용

클럽의 본 규정에 따른 협회 주최 및 주관 대회의 참가기준은 2021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1절 제7조 ‘선수 계약’ 조항 미충족 클럽에 대한 경과 조치

1. 2019 K3리그 참가클럽과 신규 참가클럽은 예외로 하여, 선수 계약 세칙에 따라 연도별 연봉 계약 선수 수를 준수하되,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선수들과는 반드시 ‘수당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당계약(훈련, 출전, 승리, 연승수당 등)’의 지급 조건은 클럽과 선수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4조 제1절 제10조 ‘유소년 팀의 조직’ 조항 미충족 클럽에 대한 경과 조치

본 규정 시행 당시 제10조 유소년 팀의 조직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2019 K3리그 참가클럽과 신규 참가클럽은 2022년도 리그 참가 전까지, 2019 내셔널리그 참가클럽은 2023년도 리그 참가 전까지 제10조의 필수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5조 제4절 제33조 ‘클럽의 지배구조’ 미충족 클럽에 대한 경과 조치

1. 본 규정 시행 당시 제33조 클럽의 지배구조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K3·4리그 참가 클럽은 본 규정 시행 이후 2021년 11월 30일 제33조의 필수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제33조 클럽의 지배구조에 대한 조건을 2022년 11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 이후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구단이 리그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연회비 이외 축구발전지원금(8,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021년 10월 5일 클럽자격심의위원회 의결, 2021년 12월 14일 이사회 승인)

제6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클럽라이선싱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축구협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KFA
Korea Football
Association

K3.K4리그 경기장 운영 세칙

Play ON



목 차

제1장 서문

제1조 개최지

제2장 시설 기준

제1절 필드 및 주요 시설

제2조 필드

제3조 워밍업 장소

제4조 골대

제5조 조명

제6조 방송 및 음향 시설

제7조 벤치

제8조 계양대

제2절 팀 및 경기관계자 시설

제9조 선수 대기실

제10조 심판 대기실

제11조 경기감독관 및 심판평가관석

제3절 관중 시설

제12조 관중석 및 관람시설

제13조 원정팀 응원단

제14조 관중 출입

제15조 비상 안전 시스템

제16조 관중을 위한 위생 시설

제17조 관중을 위한 응급 시설

제18조 장애인 관중을 위한 시설

제19조 본부석/통제실



제20조 주차장

제21조 VIP 및 의전 지역

제5절 의료 시설

제22조 선수와 관계자를 위한 응급조치와 필요시설

제23조 도핑 검사실

제6절 미디어 지역

제24조 취재기자석

제25조 기타 미디어 관련 지역의 설치 운영

제26조 미디어센터 및 기자회견장

제27조 공동취재구역(믹스드존)

제28조 카메라 위치

제29조 중계 시설

제30조 중계석

제31조 중계차량

[별첨] 경기장 및 주요 시설 규격



제1장 서문

제1조 개최지

1.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의 「K3·K4리그(이하 '리그)」 경기를 개최하고자 하는 모든 경기장은 「K3·K4리그 경기장 운영 세칙」과 「IFAB 경기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모든 경기는 협회에서 승인한 홈 경기장에서 개최되어야 하며, 홈 경기장 이외의 경기장에서 개최하고자 할 경우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변경하고자 하는 장소는 클럽의 연고지 내에 소재하는 경기장이어야 한다.
3. 경기장 승인을 받은 후 승인사항에 대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클럽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심각한 변경사항이 발견될 경우 협회는 승인을 취소 또는 보류할 수 있다.

제2장 시설 기준

제1절 경기장 및 주요 시설

제2조 필드

1. 필드는 천연잔디 또는 협회의 승인을 받은 인조잔디이어야 한다.
2. 클럽은 매 경기 최상의 잔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협회의 점검 결과에 따라 경기 개최가 제한될 수 있다.
3. 필드는 평탄하고 수평이어야 하며, 우천에 대비한 배수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4. 리그 개최를 위한 최소 필드 규격은 105m x 68m로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협회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워밍업 장소

1. 양 팀 교체 선수들을 위한 워밍업 장소는 터치라인 측 또는 골대(광고판) 뒤에 마련되어야 하며, 매 경기 개최 전 경기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기상악화, 잔디 보호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팀이 실내에서 워밍업을 할 수 있도록 각각의 독립적인 워밍업 공간 확보를 권장한다.

제4조 골대

1. 골포스트와 크로스바는 알루미늄 또는 유사한 금속재질로 만든 것으로 원형 또는 타원형이어야 하며, 세부 규격은 IFAB 경기규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 경기장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설치가 용이한 예비용 골대 1개 이상이 반드시 준비하여야 한다.

제5조 조명

- 클럽의 경기장은 1,000lux 이상의 조명 장치를 필수로 갖추어야 한다.
- 정전 및 전력공급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비상 전력 시스템 구비를 권장한다.

제6조 방송 및 음향 시설

- 경기장에는 경기 시간 및 스코어를 표시할 수 있는 전자식 전광판을 반드시 운영하여야 한다.
- 경기장에는 선수단 입장 음악 및 장내 아나운서 안내방송 등을 위한 음향시설(마이크 포함)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영상물 표출을 위한 영상시설 구비를 권장한다.

제7조 벤치

- 경기장에는 지붕이 설치된 팀 벤치 및 대기실 벤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양 팀 벤치는 최소 15명(교체선수 9명, 스태프 6명) 이상이 착석할 수 있는 좌석이 있어야 하며, 대기실 벤치는 최소 3명이 착석할 수 있는 좌석이 있어야 한다.
- 경기장 여건에 따라 벤치의 형태를 변경할 수 있으나 반드시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계양대

- 경기장에는 최소한 5개 이상의 깃발 계양대를 갖춰야 한다.
- 계양대에는 태극기, 지자체 기, 협회기(또는 리스펙트기), 대회기 등을 계양할 것을 권장한다.

제2절 팀 및 경기관계자 시설

제9조 선수 대기실

- 경기장에는 최소 2개 이상의 선수 대기실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한다.
- 선수 대기실은 아래의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 ① 개인 샤워기 6개(온수 가능) 이상, 화장실 좌변기 2개 이상(선수대기실 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선수단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 ② 최소 26명(선수 20명, 스태프 6명) 이상이 함께 앉을 수 있는 공간과 의자
 - ③ 개인사물함 최소 20개 이상(개인사물함 시설이 없을 경우, 선수의 개인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 ④ 마사지 테이블 1개 이상
 - ⑤ 작전지시판 또는 화이트보드 1개, 보드마커, 마커 지우개 (권장)
 - ⑥ 냉장고 1개 또는 아이스박스 (권장)
3. 선수 대기실에는 냉난방 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4. 선수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경기장 도착·출발 및 선수 대기실과 경기장 출입 간 안전 동선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제10조 심판 대기실

1. 경기장에는 아래의 시설을 갖춘 심판대기실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한다.
 - ① 개인 샤워기 2개(온수 가능) 이상, 화장실 좌변기 1개 이상(심판대기실 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심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 ② 최소 6명 이상이 함께 앉을 수 있는 공간
 - ③ 개인사물함 최소 6개 이상(개인사물함 시설이 없을 경우, 심판의 개인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 ④ 대형 테이블 1개, 의자 6개 이상
 - ⑤ 냉장고 1개 또는 아이스박스(권장)
2. 심판 대기실에는 냉난방 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3. 경기장에는 심판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경기장 도착·출발 및 선수 대기실과 경기장 출입 간 안전 동선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제11조 경기감독관 및 심판평가관석

1. 경기장에는 경기감독관과 심판평가관이 착석 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관중과 미디어로부터 독립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2. 경기감독관석 및 심판평가관석은 본부석 중앙에 위치하여야 하며, 필드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야 한다.
3. 경기감독관석 및 심판평가관석에는 전원공급장치 3개이상, 인터넷 시설, 컴퓨터 및 프린터 각 1대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4. 경기장에는 독립된 경기감독관 대기실 확보를 권장한다.



제3절 관중 시설

제12조 관중석 및 관람시설

1. 경기장은 최소 1,000명 이상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좌석 구분이 가능한 개인 좌석이여야 함을 권장한다.
2. 매표소 운영 시에는 관중의 편의를 위해 입장게이트 근처에 설치하여야 하며, 판매하는 티켓의 좌석별 요금에 대해 공지하여야 한다.
3.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사전에 협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변좌석은 사용을 금지한다.
4. 경기장에는 식음료 구입이 가능한 편의점(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권장한다.
5. 관중 편의를 위한 수유실 등의 각종 시설 설치 및 운영을 권장한다.

제13조 원정팀 응원단

1. 경기장 전체 수용인원의 최소 10% 이상은 원정 팀 응원단을 위해 격리하여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원정팀 응원단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은 홈 팀에 있음을 숙지하여야 한다.
2. 홈 팀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원정팀 응원단의 별도 출입구, 안전 요원 배치, 홈-원정팀 응원단의 이동 시간 차등화 등).

제14조 관중 출입

1. 공식 출입구를 제외한 외부로부터의 모든 통로는 철저히 차단되어야 하며, 모든 공식 출입구는 혼잡을 피하고,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2. 경기장에 있는 모든 비상구와 출입구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 ① 비상구와 출입구는 잠금장치를 쉽게 열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 ② 경기장에 관중이 있을 때는 문이 잠기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3. 경기장 입구에는 관중들이 쉽게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문이 부착되어야 하며, 모든 출입구와 문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용 설명이 있어야 한다.
4. 출입구 근처에는 야간에도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조명이 설치되어야 한다.

제15조 비상 안전 시스템

1. 유사시 관중의 안전을 위해 경기장에는 지역 소관 관청의 기준을 통과한 비상 안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 홈 팀은 경기시작 전 안내 방송이나 주요 지점에 안내문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 시 행동 요령 및 선수단, 관중의 대피를 위한 비상구 등 이동 동선에 대해 반드시 사전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관중을 위한 위생 시설

1. 경기장에는 남성용, 여성용 화장실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제17조 관중을 위한 응급 시설

1. 경기장에는 관중을 위한 응급조치 장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2. 응급시설 설치 시에는 시설물들의 인식이 쉽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잘 보이는 곳에 안내문을 설치해야 한다.

제18조 장애인 관중을 위한 시설

1. 경기장에는 장애인과 도우미를 위한 장애인 전용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2. 장애인 관중의 이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본부석/통제실

1. 경기장에는 경기장 전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본부석 또는 통제실이 있어야 한다.
2. 본부석 또는 통제실에서는 관중에 대한 공지사항 안내 및 전광판을 통한 정보를 고지한다.

제20조 주차장

1. 경기장에는 원정 팀을 위한 별도의 주차 공간(대형버스 1대와 승용차 5대)이 확보되어야 한다.
2. VIP용 차량 및 일반 관중용 차량이 수용 가능한 충분한 주차 공간이 확보 되어야 한다.

3.

제21조 VIP 및 의전 지역

1. 경기장에는 VIP를 위한 독점적인 의전 공간과 VIP 좌석 확보를 권장한다.

제5절 의료 시설

제22조 선수와 관계자를 위한 응급조치와 필요시설

1. 경기장에는 선수대기실 및 필드와 가까운 곳에 선수와 관계자를 위한 응급 치료실이 운영되어야 하며, 해당 시설의 운영이 제한되는 경기장은 구급차 운영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응급 치료실에는 냉난방 시설과 치료를 위한 보조침대가 구비되어야 한다.
3. 경기장에는 산소호흡기를 비롯한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한 구급차 (K3리그 2대이상, K4리그 1대 이상)와 예비 차량이 있어야 하며, 구급차 운전사는 반드시 차량 내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제23조 도핑 검사실

1. 협회 요청 시, 클럽은 경기장 내 도핑검사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핑검사실 설치 시에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① 냉난방 시설이 있어야 하며, 인접한 곳에 대기실, 검사실,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 ② 대기실과 검사실은 연결되는 별도의 실을 구비하여야 하나 한 장소에 파티션을 설치해 대기실과 검사실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대기실에는 8명 이상 앉을 수 있는 충분한 의자, TV, 물과 음료 등이 보관된 냉장고가 있어야 한다.
 - ④ 검사실은 최소한 테이블 1개, 의자 4개, 물이 나오는 싱크대,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 ⑤ 화장실은 검사실 내에 있거나 검사실과 바로 연결되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2. 홈 팀에서는 도핑검사실에 관중과 언론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여야 한다.

제6절 미디어 지역

제24조 취재기자석

1. 경기장에는 최소 10명 이상의 취재기자를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이 구비되어야 한다. 기자석은 반드시 책상이 있어야 하며 전원과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취재기자석은 경기장 스탠드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미디어센터, 기자회견장, 공동취재구역(믹스드 존)과 가까이 위치하여야 한다.
3. 취재기자석에서 기자회견장과 미디어센터로 이동하는 통로는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25조 기타 미디어 관련 지역의 설치 운영

1. 경기장 내에 취재기자석, 미디어센터, 기자회견장, 공동취재구역(믹스드존), TV 및 라디오 중계석 등의 설치를 권장하며, 결승전 등의 주요 경기 개최 시 협회가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한다.

제26조 미디어센터 및 기자회견장

1. 협회 요청 시, 클럽은 미디어센터와 기자회견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미디어센터에는 냉난방 시설과 업무를 위한 각종 장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2. 미디어센터는 아래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① 최소 20인 이상이 업무할 수 있는 공간과 테이블, 의자, 인터넷 시설
 - ② 지도자 및 선수 인터뷰를 위한 테이블, 의자 및 음향 시스템
 - ③ 복사기 1대와 관련 소모품
3. 미디어센터와 기자회견장은 취재기자석, 공동취재구역(믹스드존)과 가까이 위치하여야 한다.
4. 부득이한 경우, 미디어센터와 기자회견장은 겸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공동취재구역(믹스드 존)

1. 공동취재구역은 각 선수 대기실에서 팀 버스로 이동하는 이동로에 마련한다.
2. 공동취재구역은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며 지도자, 선수, 언론만이 참석 가능하다.

제28조 카메라 위치

1. 메인 카메라 플랫폼은 경기장 스탠드 정중앙에 위치하여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최소 8m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플랫폼의 최소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4m, 2m로 한다.
2. 카메라의 위치는 반드시 하프라인 정중앙에 위치하여야 한다.
3. 메인 카메라 외 기타 카메라의 위치는 방송사 요청 사항에 따라 설치한다.

제29조 중계운영석 및 카메라

1. 홈 클럽은 경기 시작 5시간 전부터 종료 후 1시간까지 중계에 필요한 장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중계운영석(책상 1개, 의자 3개, 전력, 멀티탭, 우천대비시설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중계운영석은 본부석 부근에 위치하여야 하며 기자석 등 대체 가능한 시설이 있을 경우 안전을 위한 통제선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3. 홈 클럽은 중계 송출에 필요한 인터넷 단독 회선(LAN선) 또는 모뎀을 비치하여야 하고, 인터넷 속도는 최소 100Mbps(500Mbps~1Gbps)이어야 한다. 또한, 중계용 인터넷 회선은 경기감독관, 심판평가관, 미디어 등 다른 인원들과 공유할 수 없다.
4. 홈 클럽은 중계 카메라 2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하며, 장소 확보에 있어 방송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메인 카메라는 본부석 중앙 스탠드에 설치되어야 하며, 지면은 고르고 평평하여야 한다.

제30조 중계석

1. 홈 클럽은 필요 시 독립적으로 보호되는 중계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중계석은 최소 3명 이상 앉을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가 구비되어야 한다.
3. 중계석에는 주 전력과 예비 전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제31조 중계차량

1. 경기장에는 메인 카메라 가까이 방송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주관 방송사의 OB Compound가 요구하는 주 전력과 예비 전력을 갖추어야 한다.
3. TV 중계를 위한 모든 지역의 안전은 전 시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KFA
Korea Football
Association

K3.K4리그 선수계약세칙

Play ON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제2조 대상

제3조 목적

제2장 선수 계약

제4조 계약의 구분

제5조 계약의 작성

제6조 계약기간 및 급여

제7조 계약내용의 제출

제8조 선수의 연봉 및 수당 지급

제9조 입대 및 학교 진학 선수

제10조 자유 계약 선수

제11조 계약의 해지

제3장 선수 계약의 양도

제12조 선수 계약의 양도

제13조 선수의 이적보상금(이적료)

제4장 기타

제14조 기타

별첨 1 연봉계약과 수당계약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시행 규칙은 「K3·K4리그 선수 계약 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 적용대상

1. 이 세칙은 K3·K4리그(이하 “리그”라 한다)에 참가하기 위하여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하였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모든 선수에게 적용된다.
2. 외국인 선수에 대하여 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국내 선수의 해외 이적에 관한 사항은 협회 규정 또는 국제축구연맹(이하 “FIFA”라 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목적

이 세칙은 리그 소속 선수의 계약 및 이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협회와 각 회원단체(이하 “클럽”이라 한다), 리그 소속 선수(이하 “선수”라 한다)등 리그의 전반적인 선수 계약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선수 계약

제4조 계약의 구분

1. 선수에 대한 계약은 「연봉계약」과 「수당계약」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2. 연봉계약은 클럽으로부터 연봉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연봉계약 선수가 계약기간 만료 전 타 클럽으로 이적하는 경우, 이적에 따른 이적 보상금(이적료)을 청구할 수 있다.
3. 수당계약은 클럽으로부터 수당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수당계약 선수가 타 클럽으로 이적 하는 경우, 이적 보상금(이적료)에 대한 청구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연봉계약은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수당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수당계약은 연봉계약으로 변경 할 수 있다.
5. 시즌 중이라도 수당계약에서 연봉계약으로 변경되는 경우, 클럽은 변경된 계약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의 작성

1. 클럽은 협회에 클럽 소속으로 등록하는 모든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선수의 해외 이적에 관한 사항과 외국인 선수에 대하여 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회 또는 FIFA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클럽과 선수 간 계약은 협회가 정한 표준 계약서에 의해 체결하여야 하며, 표준계약서의 조항 및 문구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 부분은 효력이 없다. 다만, 표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 사항은 계약과 관련된 규정 및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합의하에 추가할 수 있다.
3. 클럽과 선수 간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클럽 대표자(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위임받은 담당자)와 해당 선수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선수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또는 법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클럽과 선수 간 계약에 에이전트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① FIFA 에이전트만이 대리인 자격으로 클럽, 선수와 협상 및 계약을 할 수 있다
 - ② FIFA 에이전트에 대한 사항은 FIFA 에이전트 규정 (FFAR)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다.
5. 클럽과 선수 간 계약 체결 시 클럽은 공식 명칭을 기재하고, 클럽 대표자(또는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선수 및 에이전트는 본인의 서명(또는 날인)을 한다.
6. 체결된 계약서는 정본 2부를 작성하여 선수와 해당 클럽이 각 1부씩 보관하며, 클럽은 협회에 선수와의 계약이 합법적인 절차와 규정에 의해 체결되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기간 및 급여

1. 모든 선수의 계약 기간은 최소 5개월에서 최대 5년으로 한다. 단, 군 전역 선수는 예외로 한다.
2. 국내 선수의 계약 기간은 최종 계약 연도의 12월 말일에 종료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만, 프로 지위 선수의 계약 기간은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해당 시즌 종료일(12월 말일)까지로 한다.
3. 선수의 보수(연봉 및 수당 등)에 관한 세부 내역은 계약서에 반드시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
4. K3리그 참가 클럽은 최소 20명 이상의 선수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K4리그 참가 클럽은 최소 5명 이상의 선수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 선수 수에 따라 연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K4리그 연봉계약 선수 수는 아래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체결하여야 한다.

구분(시즌)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선수 수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5. K3리그로 승격한 클럽의 경우, 승격 연차에 따라 아래 최소 인원수에 해당하는 선수와 연봉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한다.

구분(시즌)	1년차	2년차	3년차
2029년까지	10명	15명	20명
2030년부터	15명	20명	-

6. 연봉계약을 체결한 선수의 최저 연봉은 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클럽은 수당계약을 체결한 선수에게도 반드시 기본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8. 단, 보충역선수의 보수는 수당(훈련수당, 출전수당, 승리수당 등)으로만 지급할 수 있다. (2026.06.29)
9. 클럽이 선수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봉(또는 수당)을 체불한 경우, 선수는 협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내부 규정 등에 의거하여 해당 클럽을 징계할 수 있다.
10. 외국국적 선수는 수당 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며, 반드시 리그 최저 연봉 이상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내용의 제출

1. 클럽은 선수와 계약을 체결한 후, 선수 등록 시 전산시스템(joinkfa)을 통해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가 요청하는 경우 별도로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 서명(또는 날인)이 포함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클럽은 계약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명시한 문서와 함께 변경된 계약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서 외의 이면계약이 확인될 경우, 협회는 해당 계약에 관련된 클럽, 관계자 또는 선수를 징계할 수 있다.

제8조 선수 급여의 제세공과금 및 감액 지급

1. 계약서에 기재하는 모든 금액은 세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해당 소득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선수가 부담하되, 클럽은 연봉 및 수당 지급 시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클럽은 선수가 공상(훈련 또는 경기 중 입은 상해 및 질병)이 아닌 부상, 질병 또는 제재(징계)로 인하여 45일 이상 선수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4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1일당 연봉의 1/36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본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회 또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 입대 및 학교 진학 선수

1. 선수가 계약기간 중 입대하는 경우, 전역 즉시 복귀를 조건으로 선수 계약이 자동 정지된다. 이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입대 전 잔여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2. 중/고교 졸업(또는 중퇴)선수가 클럽 입단 이후 소속 클럽과 합의가 있을 경우, 졸업(또는 중퇴)즉시 복귀를 조건으로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수는 계약정지 기간 중 재학 중인 팀의 선수로서 제반 활동을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선수가 전역 또는 졸업(중퇴)하는 경우, 소속 클럽은 입대(또는 진학) 당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변경(기존 계약기간 중 입대기간 또는 진학기간 제외)하여, 전역 또는 졸업(또는 중퇴) 즉시 변경된 계약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클럽과 선수가 사전에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된 새로운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유 계약 선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는 클럽 또는 선수의 요청에 따라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하며, 자유계약선수는 다른 클럽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① 클럽과 선수 간 계약이 해지된 경우
 - ② 계약기간의 종료 이전에 클럽이 선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2. 자유계약선수를 포함한 선수 등록 현황의 공시 방법은 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1. 클럽과 선수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잔여 연봉은 당사자간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2. 클럽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클럽은 계약에서 정한 잔여 연봉 전액을 선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선수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해당 월의 잔여 연봉만 지급한다.

제3장 선수 계약의 양도

제12조 선수 계약의 양도

1. 클럽은 선수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중 소속 선수를 타 클럽에 양도(임대 또는 이적) 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은 최소 등록기간과 다음 등록기간 사이의 기간으로 하며, 최대 1년(시즌 종료 시까지)으로 한다. 단, 임대 계약은 횟수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다.
2. 양도가 가능한 기간은 협회가 정한 K3.K4리그 선수 등록 기간에 따른다. 단, 병역복무 중인 선수는 타 클럽에 양도할 없다.
3. 에이전트의 서비스를 통해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사항은 FIFA 에이전트 규정 (FFAR)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다.
4. 선수를 양도,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 클럽은 이적(임대)확인서 및 계약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이적(임대) 선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 선수의 이적보상금(이적료)

1. 연봉계약 선수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타 클럽으로 이적하고자 하는 경우, 원 소속 클럽은 이적을 요청한 클럽에 이적 보상금(이적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당계약 선수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타 클럽으로 이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 소속 클럽은 이적 보상금(이적료)을 청구할 수 없다.
2. 연봉계약 선수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타 클럽으로 이적한 경우라도, 이적한 클럽과 수당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 소속 클럽은 이적보상금(이적료)을 받을 수 없다.

제4장 기타

제14조 기타

1. 클럽이 타 클럽의 선수 계약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선수의 등록 공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협회는 선수 계약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클럽을 징계하거나 해당 선수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3. 협회는 제2항의 따른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 또는 피해를 입은 클럽의 요청에 따라 무고한 이익을 제기한 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4. 연봉계약 선수는 소속 클럽과 협의하여 클럽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다른 직업을 겸업할 수 있으며, 수당계약 선수는 겸업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본 세칙에 위배된 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그 계약을 체결한 해당클럽, 관계자와 선수는 협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6. 클럽은 선수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대가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선수 등록을 할 수 없다.

<부칙>

1.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의 관련 규정과 AFC, FIFA의 정관을 참고하여 협회가 결정할 수 있다.
1. 제6조 6항의 최저 연봉(12개월기준)은 다음의 기준과 같으며 계약 기간에 따라 일할 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예시: 2025년 10개월 연봉계약 선수의 총 급여 : 2,000만원/12개월 X 10개월)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최저연봉	2,000만원	2,200만원	2,400만원



별첨 1 : 연봉계약과 수당계약

1. 계약의 구분

순번	구분	연봉계약	수당계약
1	지급기준	연봉(기본급)+수당(선택사항)	기본급(일반선수 필수사항) 수당(훈련, 출전, 승리 일체)
2	이적시 권리	계약 종료 전 : 이적보상금(이적료) 청구 인정 계약 종료 후 : 없음	이적보상금(이적료) 없음
3	계약기간	최소 5개월 ~ 최대 5년	최소 5개월 ~ 최대 5년

※ 보충역선수의 보수는 수당(훈련수당, 출전수당, 승리수당 등)으로만 지급할 수 있다. (2026.06.29)

2. 이적 시 연봉계약 선수 이적보상금(이적료)산정 기준

구분	연봉계약	수당계약
계약만료 이전	이적보상금(이적료) 발생	없음
계약만료 이후	이적보상금 없음	없음

K3·K4리그 선수 계약서

보관자	
선수	
클럽	

_____ (생년월일 포함) (이하 '선수')와 _____ 클럽(이하 '클럽')은 리그 운영에 관한 제반규정과 관리세칙을 준수하고 클럽은 클럽으로서의 또한 선수는 선수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의 증명을 위해 20____년 ____ 월 ____ 일 선수계약서(이하 '본 계약')를 작성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리그 소속 클럽에 입단하는 선수와 클럽의 고용관계에 관하여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가 정한 제반 규정에 따른 세부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호 이익과 리그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수의 의무

1. 선수는 경기규칙과 윤리강령을 비롯해 협회가 정한 제반규정 및 클럽 내부 규칙,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선수는 자신의 모든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실히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선수활동에 필요한 육체적·정신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선수는 광고 선전, 홍보 및 마케팅 활동에 참가 또는 관여하는 경우 클럽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선수는 다른 선수에 대해 폭행, 상해 등 폭력 행위를 하거나 지시해서는 안 되며,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5. 선수는 클럽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하여야 한다.

제3조 클럽의 의무

1. 클럽은 협회가 정한 제반규정 및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클럽은 선수의 인권을 존중하고, 경기력 향상 등 선수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3. 클럽은 클럽 소속의 다른 선수,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클럽은 선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유지

선수는 경기, 훈련에 관한 정보(경기의 전략, 전술, 선수의 기용, 작전, 암호, 훈련방식 등)를 클럽 소속의 관련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 다른 선수 외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퍼블리시티권 제공

선수는 계약기간 동안 선수활동에 한정하여 자신의 성명, 초상, 예명, 아호, 음성 등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는데 동의한다.

제6조 금지사항

1. 선수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Doping Code)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프로스포츠도핑방지규정에 정해진 금지약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선수는 계약기간 동안 폭행, 상해, 성폭력, 성희롱, 사기, 마약, 약물복용, 불법도박, 음주운전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선수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선수는 계약기간 동안 협회, 클럽,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클럽은 계약기간 동안 클럽 소속의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선수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협회 및 클럽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제3자가 주최하는 축구 또는 그 외 스포츠 경기, 행사 등에 참가하지 않는다.

제7조 부정행위

1. 선수는 게임, 사행행위, 도박, 복권 등 그 명칭 여하 및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선수는 승부조작 등 고의로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여 경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선수는 감독, 코치, 스태프, 다른 선수가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직접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는 것을 알게 되거나, 이를 의심할 정황이 있는 경우 즉시 클럽에 알려야 한다. 클럽은 선수가 보복 등의 걱정 없이 알릴 수 있도록 담당자 지정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메디컬 테스트 및 상해보험 가입 등

1. 클럽은 선수와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클럽이 지정한 병원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메디컬 테스트 실시하지 않음으로 모든 책임은 해당 클럽에 있다.
2. 클럽은 선수의 메디컬 테스트 결과에 따라 선수의 경기 출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클럽에 있다.
3. 메디컬 테스트에 소요되는 비용은 클럽이 전액 부담한다.
4. 클럽은 선수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한다.

제9조 보수(연봉, 수당 등)

1. 연봉이라 함은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의미한다.
2. 수당이라 함은 훈련수당, 출전수당, 승리수당 금액 일체를 의미한다.
3. 보수(연봉 및 수당)은 본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4. 수당은 클럽과 선수간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5. 계약과 관련한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는 협회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용품

클럽은 선수가 경기, 훈련에 필요한 모든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구체적인 범위 및 개인 용품은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 비용 부담

클럽은 공식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복리후생

제10조, 제11조 이외의 복리후생에 관한 부분은 클럽과 선수의 합의에 의해 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하고, 명시된 부분 이외의 요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3조 치료비

1. 선수가 선수활동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신속하게 클럽에 알려야 한다.
2. 선수가 팀 활동 중 입은 상해 및 질병으로 진료를 요하게 됐을 때는 클럽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클럽이 부담해야 한다.
3. 클럽이 지정하는 병원 이외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제2항 치료비와의 차액은 선수 본인이 부담한다.
4. 선수가 선수 활동과 관련 없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신속하게 클럽에 알려야 한다.
5. 선수가 입은 상해 및 질병으로 진료를 요하게 됐을 때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비용에 대해서는 클럽이 부담할 의무가 없다.

제14조 선수계약 해지

1. 클럽 또는 선수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선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①. 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 의한 연봉 및 수당 지급을 3개월 이상 미지급한 경우
 - ②. 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수를 지속적으로 경기 또는 훈련에 참가시키지 않거나 선수의 동의없이 2군 팀 또는 유소년팀과 훈련시키는 경우
 - ③. 클럽이 해산, 파산하는 경우
 - ④. 클럽이 협회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
 - ⑤. 기타 클럽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본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3. 클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①. 선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회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 ②. 선수가 클럽의 일원으로서 승부조작등과 같은 클럽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③. 선수가 공상이 아닌 부상, 질병 등의 사유로 60일 이상 선수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④. 선수가 선수 활동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발견된 경우
 - ⑤. 선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공식 훈련 및 경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 ⑥. 기타 선수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본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클럽은 당사자간의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연봉 및 수당을 지급하며 이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5. 본 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선수는 다른 클럽과 자유롭게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 제재

1. 선수에 대한 제재는 선수가 인지한 클럽 내부 규정에 의한다.
2. 협회의 상벌을 통해 선수에 대한 제재금이 부과된 경우 기간 내에 제재금이 납입되지 않아 협회의 요청이 있을시 클럽은 선수의 연봉에서 우선 변제할 수 있다.

제16조 이적과 임대

1. 클럽은 선수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기간 중 다른 클럽과의 양도·양수(이하 '이적') 합의에 따라 클럽의 본 계약상 권리·의무를 다른 클럽에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이적 이후의 계약기간과 연봉(수당)은 양수 클럽과 선수 간 합의에 따라 본 계약과 달리 정할 수 있다.
2. 클럽은 선수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기간 중 소속된 선수를 다른 클럽에 임대할 수 있다.

3. 이적 합의에 따라 발생하는 이적료의 처리 및 배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이적료는 원칙적으로 클럽의 수입으로 하되, 클럽은 수령한 이적료 총액의 ___%를 선수에게 이적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단, 선수와 구단 계약 당사자 간 별도 합의할 경우 구단은 선수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클럽은 상대 클럽으로부터 이적료를 완납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호의 금액을 선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3항 제1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의 클럽이 선수 이적료로 금 _____원(W) 이상을 제시할 경우 클럽은 선수의 이적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즉시 이적 절차에 응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선수는 이적료 배분 권리를 포기하기로 계약 당사자 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
- ④. 상기 제3호의 이적료를 어떤 형태로든 선수 개인이 지급할 수 없다.

제17조 계약기간

1. 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클럽과 해당선수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선수가 계약기간 중 입대하는 경우, 전역 즉시 복귀를 조건으로 선수 계약이 자동 정지된다. 이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입대 전 잔여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3. 클럽은 계약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선수와 합의에 의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18조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클럽과 선수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해결을 진행할 수 있다.
 - ①. 클럽과 선수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
 - ②. 클럽과 선수 일방이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협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해결
 - ③. 협회 분쟁조정위원회 규정에 따른 최종 중재·조정결정기구에 의한 해결
2. 협회 분쟁조정위원회 규정에 따른 최종 중재·조정결정기구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는 최종적인 것으로 불복할 수 없다.

제19조 계약의 효력 및 변경

1.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있다.
2. 본 계약은 클럽과 선수간의 양자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계약문서에 의해서만 수정할 수 있으며, 구두에 의한 계약수정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천재지변, 전쟁, 폭동, 감염병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당사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불가피하게 지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 하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4.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이면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5. 계약이 변경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계약서를 협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20조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통상적인 관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21조 보관

본 계약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고, 선수와 클럽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체결일시] 20__년 __월 __일

[체결장소]

[계약 체결 날인]

위 클럽과 선수는 본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확인하였고, 이에 동의하므로 아래와 같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1) 계약 체결 클럽

- ① 클럽 명칭 : _____
- ②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_____ (인)
- ③ 클럽 법인등록번호 : _____
- ④ 클럽 주소 : _____

2) 계약 체결 선수

- ① 선수 성명 : _____ (인)
- ② 선수 주소 : _____
- ③ 선수 생년월일 : _____

※ 계약체결선수가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일 경우

- ④ 법정대리인 성명 / 생년월일 : _____ (인)
- ⑤ 법정후견인 성명 / 생년월일 : _____ (인)

※ 법정후견인: 법정대리인이 없을 경우, 계약 체결 선수의 호적에 법정후견인으로 등록된 자에 한함.

3) 계약체결 에이전트

- ① 에이저트 서명 : _____
- ② 에이전트 생년월일/ FIFA 라이선스 ID : _____
- ③ 에이전트 국적 : _____
- ④ 에이전트 서명 날인 : _____

* 에이전트는 본 계약체결일 이전에 FIFA 축구 에이전트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에이전트가 아닌자에 의한 계약은 법적으로 그 지위와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에이전트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FIFA 에이전트 규정』에 따른 에이전트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클럽 직인날인 : _____ 선수 서명날인 : _____

K3·K4리그 선수 계약서 (외국인 선수)

선수	
클럽	

_____ (생년월일 포함) (이하 '선수')와 _____ 클럽(이하 '클럽')은 리그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과 관리세칙을 준수하고 클럽은 클럽으로서의 또한 선수는 선수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의 증명을 위해 20____년 ____ 월 ____ 일 선수계약서(이하 '본 계약')를 작성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리그 소속 클럽에 입단하는 선수와 클럽의 고용관계에 관하여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가 정한 제반 규정에 따른 세부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호 이익과 리그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수의 의무

1. 선수는 경기규칙과 윤리강령을 비롯해 협회가 정한 제반규정 및 클럽 내부 규칙,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선수는 자신의 모든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실히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선수활동에 필요한 육체적·정신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선수는 광고 선전, 홍보 및 마케팅 활동에 참가 또는 관여하는 경우 클럽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선수는 다른 선수에 대해 폭행, 상해 등 폭력 행위를 하거나 지시해서는 안 되며,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5. 선수는 클럽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하여야 한다.

제3조 클럽의 의무

1. 클럽은 협회가 정한 제반규정 및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클럽은 선수의 인권을 존중하고, 경기력 향상 등 선수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3. 클럽은 클럽 소속의 다른 선수,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클럽은 선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유지

선수는 경기, 훈련에 관한 정보(경기의 전략, 전술, 선수의 기용, 작전, 암호, 훈련방식 등)를 클럽 소속의 관련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 다른 선수 외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퍼블리시티권 제공

선수는 계약기간 동안 선수활동에 한정하여 자신의 성명, 초상, 예명, 아호, 음성 등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것 사용에 동의한다.

제6조 금지사항

1. 선수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Doping Code)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프로스포츠도핑방지규정에 정해진 금지약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선수는 계약기간 동안 폭행, 상해, 성폭력, 성희롱, 사기, 마약, 약물복용, 간통, 불법도박, 음주운전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선수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선수는 계약기간 동안 협회, 클럽,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클럽은 계약기간 동안 클럽 소속의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선수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협회 및 클럽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제3자가 주최하는 축구 또는 그 외 스포츠 경기, 행사 등에 참가하지 않는다.

제7조 부정행위

1. 선수는 게임, 사행행위, 도박, 복권 등 그 명칭 여하 및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선수는 승부조작 등 고의로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여 경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선수는 감독, 코치, 스태프, 다른 선수가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직접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는 것을 알게 되거나, 이를 의심할 정황이 있는 경우 즉시 클럽에 알려야 한다. 클럽은 선수가 보복 등의 걱정 없이 알릴 수 있도록 담당자 지정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메디컬 테스트 및 상해보험 가입 등

1. 클럽은 선수와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클럽이 지정한 병원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메디컬 테스트 실시하지 않음으로 모든 책임은 해당 클럽에 있다.
2. 클럽은 선수의 메디컬 테스트 결과에 따라 선수의 경기 출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클럽에 있다.
3. 메디컬 테스트에 소요되는 비용은 클럽이 전액 부담한다.
4. 클럽은 선수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한다.

제9조 보수(연봉, 수당 등)

1. 연봉이라 함은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의미한다.
2. 수당이라 함은 훈련수당, 출전수당, 승리수당 금액 일체를 의미한다.
3. 보수(연봉 및 수당)은 본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4. 수당은 클럽과 선수간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용품

클럽은 선수가 경기, 훈련에 필요한 모든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구체적인 범위 및 개인 용품은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 비용 부담

클럽은 공식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복리후생

제10조, 제11조 이외의 복리후생에 관한 부분은 클럽과 선수의 합의에 의해 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하고, 명시된 부분 이외의 요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3조 치료비

1. 선수가 선수활동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신속하게 클럽에 알려야 한다.
2. 선수가 팀 활동 중 입은 상해 및 질병으로 진료를 요하게 됐을 때는 클럽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클럽이 부담해야 한다.
3. 클럽이 지정하는 병원 이외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제2항 치료비와의 차액은 선수 본인이 부담한다.
4. 선수가 선수 활동과 관련 없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신속하게 클럽에 알려야 한다.
5. 선수가 선수 활동과 관련 없이 입은 상해 및 질병으로 진료를 요하게 됐을 때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비용에 대해서는 클럽이 부담할 의무가 없다.

제14조 선수계약 해지

1. 클럽 또는 선수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선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① 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 의한 연봉 및 수당 지급을 3개월 이상 미지급한 경우
 - ② 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수를 지속적으로 경기 또는 훈련에 참가시키지 않거나 선수의 동의없이 2군 팀 또는 유소년팀과 훈련시키는 경우
 - ③ 클럽이 해산, 파산하는 경우
 - ④ 클럽이 협회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
 - ⑤ 기타 클럽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본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3. 클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① 선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회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 ② 선수가 클럽의 일원으로서 승부조작등과 같은 클럽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③ 선수가 공상이 아닌 부상, 질병 등의 사유로 60일 이상 선수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④ 선수가 선수 활동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결함이 발견된 경우
 - ⑤ 선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공식 훈련 및 경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 ⑥ 기타 선수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본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클럽은 당사자간의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연봉 및 수당을 지급하며 이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5. 본 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선수는 다른 클럽과 자유롭게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 제재

1. 선수에 대한 제재는 선수가 인지한 클럽 내부 규정에 의한다.
2. 협회의 상벌을 통해 선수에 대한 제재금이 부과된 경우 기간 내에 제재금이 납입되지 않아 협회의 요청이 있을시 클럽은 선수의 연봉에서 우선 변제할 수 있다.

제16조 이적과 임대

1. 클럽은 선수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기간 중 다른 클럽과의 양도·양수(이하 '이적') 합의에 따라 클럽의 본 계약상 권리·의무를 다른 클럽에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이적 이후의 계약기간과 연봉(수당)은 양수 클럽과 선수 간 합의에 따라 본 계약과 달리 정할 수 있다.

2. 클럽은 선수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기간 중 소속된 선수를 다른 클럽에 임대할 수 있다.
3. 이적 합의에 따라 발생하는 이적료의 처리 및 배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이적료는 원칙적으로 클럽의 수입으로 하되, 클럽은 수령한 이적료 총액의 ___%를 선수에게 이적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단, 선수와 구단 계약 당사자 간 별도 합의할 경우 구단은 선수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클럽은 상대 클럽으로부터 이적료를 완납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호의 금액을 선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3항 제1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의 클럽이 선수 이적료로 금 _____원(W) 이상을 제시할 경우 클럽은 선수의 이적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즉시 이적 절차에 응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선수는 이적료 배분 권리를 포기하기로 계약 당사자 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
 - ④. 상기 제3호의 이적료를 어떤 형태로든 선수 개인이 지급할 수 없다.

제17조 계약기간

1. 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클럽과 해당선수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클럽은 계약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선수와 합의에 의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18조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클럽과 선수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①. 클럽과 선수간의 합의에 의한 해결
 - ②. 클럽과 선수 일방이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국제축구연맹(FIFA)에 분쟁해결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FIFA의 결정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의 효력 및 변경

1.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있다.
2. 본 계약은 클럽과 선수간의 양자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계약문서에 의해서만 수정할 수 있으며, 구두에 의한 계약수정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천재지변, 전쟁, 폭동, 감염병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당사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불가피하게 지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 하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이면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4. 계약이 변경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계약서를 협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20조 기타

1. 본 계약은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해석되고 규율된다. 그리고 외국인선수의 경우 영문본과 국문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규정 해석 시 영문본과 국문본이 충돌되거나 그 의미가 모순될 경우 국문본을 우선으로 한다.
2.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통상적인 관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21조 보관

본 계약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고, 선수와 클럽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체결일시] 20 ____ 년 ____ 월 ____ 일

[체결장소]

[계약 체결 날인]

위 클럽과 선수는 본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확인하였고, 이에 동의하므로 아래와 같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1) 계약 체결 클럽

- ① 클럽명 : _____
- ② 대표자 성명 : _____ (인)
- ③ 클럽 법인등록번호 : _____
- ④ 클럽 주소 : _____

2) 계약 체결 선수

- ① 성명 : _____ (인)
- ② 생년월일 : _____
- ③ 국적 : _____
- ④ 거주지 주소 : _____
- ⑤ 여권번호 : _____
- ⑥ 전 소속 클럽 (국가명) : _____

※ 계약체결선수가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일 경우

- ⑦ 법정대리인 성명 : _____ (인)

3) 계약체결 에이전트

- ① 성명 : _____ (인)
- ② 생년월일 : _____
- ③ FIFA 라이선스 ID : _____
- ④ 국적 : _____

* 에이전트는 본 계약체결일 이전에 FIFA 축구 에이전트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에이전트가 아닌자에 의한 계약은 법적으로 그 지위와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에이전트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FIFA 에이전트 규정』에 따른 에이전트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클럽 직인날인 : _____ 선수 서명날인 : _____

K3-K4 League Player Contract For Foreign Players

Player	
Club	

"The player (hereinafter, the 'Player') and the club (hereinafter, the 'Club') hereby confirm their commitment to adhere to all regulations related to league operations and management guidelines. The Club, acting as a club, and the Player, acting as a player, pledge to faithfully fulfill their respective obligations. To demonstrate this commitment, this Player Contract Agreement (hereinafter, 'Agreement') is entered into on ____ (Month) _____ (Day) _____ (Year).

ARTICLE 1 PURPOSE

This Agreement aims to clarify the specific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layer joining the league-affiliated Club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regulations set forth by the Korea Football Association (hereinafter, the 'Association') with the purpose to promote mutual benefits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league."

ARTICLE 2 OBLIGATIONS OF THE PLAYER

1. Players must adhere to competition regulations, code of ethics in conjunction with all regulations set by the Association and Club regulations and decisions.
2. The Player shall diligently engage in Player Activities to the best of his/her ability. The Player shall put forth his/her best efforts to maintain the optimal physical and mental condition necessary required for Player Activities.
3. If the player participates or becomes involved in advertising, promotional, and marketing activities, the player must notify the club.
4. The player must not engage in or instruct others to commit acts of violence, assault, or any form of aggression against other players. Moreover, the player must refrain from committing sexual violence, sexual harassment, or any offenses stipulated by law,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laws related to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victims.
5. The player must respect the club's opinions and act with good faith and sincerity in fulfilling obligations.

ARTICLE 3 CLUB OBLIGATIONS

1. The Club shall comply with the regulations and decisions set forth by the Korea Football Association.
2. The Club shall respect human rights of the Player and strive to support him/her so that the Player can solely concentrate on the Player Activities.
3. The club must make efforts to prevent other players, staff, coaches, and personnel affiliated with the club from committing offenses stipulated by law,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laws related to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victims.
4. The club must respect the opinions of players and act with good faith and sincerity

in fulfilling obligations.

ARTICLE 4 NON-DISCLOSURE

The player must not disclose information related to matches and training (such as game strategies, tactics, player selection, operations, codes, training methods, etc.) to any third party outside the club's relevant personnel, coaches, staff, and players.

ARTICLE 5 PUBLICITY RIGHTS, ETC.

During the contract period, the player agrees to the use of their name, likeness, signature, voice, and any other identifiable aspects solely for the purposes of Player activities.

ARTICLE 6 PROHIBITED ACTIVITIES

1. The Player shall not use any prohibited substances specified by the World Anti-Doping Code of the World Anti-Doping Agency (WADA) and the Professional Sports Anti-Doping Regulations of the Korea Anti-Doping Agency (KADA).
2. During the contract period, the player must refrain from engaging in any actions that violate laws, such as assault, injury, sexual violence, harassment, fraud, drug abuse, adultery, illegal gambling,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any behavior that undermines the dignity of the player as a professional athlete.
3. During the contract period, the player must avoid making statements or engaging in actions that damage the reputation or credibility of the Association, the Club, or others.
4. The club must make efforts during the contract period to prevent any personnel, coaches, or staff affiliated with the club from making statements or engaging in actions that damage the reputation or credibility of the player.
5. The player shall not participate in football or other sports competitions or events organized by a third party without the prior consent of the Association and the Club.

ARTICLE 7 MISCONDUCT

1. The Player shall not engage in any activities, regardless of their names or legal status, where economic benefits are provided based on the outcome of a game, gambling, lotteries, or any other activity related to game results.
2. The Player shall not engage in any activities that affect the outcome of games, including match-fixing and intentionally failing to perform to his/her ability.
3. The Payer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Club if he/she becomes aware of or has any doubts about the actions of managers, coaches, staff or other players directly or instructing others to perform the actions stated in Sections 1 and 2. The club shall establish procedures, including appointing a designated person, to ensure that players can report without fear of retaliation, and inform the players of these procedures.

제8조 MEDICAL EXAMINATION, ACCIDENT INSURANCE, ETC.

1. Prior to entering into this Agreement with the Player, the Club shall conduct a medical examination at a hospital designated by the Club. Any liability arising from

the failure to conduct the medical examination shall be borne by the club.

2. Based on the results of the medical examination, the Club shall determine the Player's eligibility to participate in matches, and the responsibility for such determination shall lie with the Club.
3. The costs associated with the Medical Examination will be fully borne by the club.will be fully borne by the club.
4. Upon execution of this Contract, the Club shall purchase an insurance policy against the risk of the Player's injury or death in relation with the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다.

ARTICLE 9 COMPENSATION(ANNUAL SALARY, ALLOWANCES, ETC.)

1. The term "allowances" encompasses training allowances, appearance allowances, victory bonuses, and all related amounts.
2. The compensation(annual salary and allowances) must be explicitly specified in this contract.
3. The details of allowances shall be determined through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club and the player.
4. Sanctions for violations of contract-related regulations shall be based on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Association.

ARTICLE 10 EQUIPMENT

The club shall provide the player with all necessary equipment for games and training at no cost. The specific scope and personal items will be determined through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1 EXPENSES

The club shall bear all expenses (transportation, meals, accommodation) incurred due to official activities.

ARTICLE 12 WELFARE BENEFITS

Provisions related to welfare benefits other than those in Articles 10 and 11 shall be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club and the player and specified in the contract. Any demands beyond those specified in the contract shall not be accepted.

ARTICLE 13 MEDICAL EXPENSES

1. The Player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Club of any injury or illness related to the Player Activities.
2. If the player requires treatment for injuries or illnesses incurred during team activities, they must receive treatment at a hospital designated by the club, and the expenses incurred should be covered by the club.
3. In the case of receiving treatment at a hospital other than the one designated by the club, the player is responsible for the difference in costs compared to the expenses specified in subsection 2.

4. The Player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Club of any injury or illness not related to the Player Activities.
5. If a player requires medical treatment for injuries or illnesses unrelated to athletic activities, the club is not obligated to cover the treatment costs.

ARTICLE 14 TERMINATION OF PLAYER CONTRACT

1. The contract may be terminated if the club or the player violates this contract without justifiable reasons.
2. The player may immediately terminate this contract in the following cases:
 - ① If the club unjustifiably fails to pay the salary and allowances specified in this contract for more than three months;
 - ② If the club continuously refrains from allowing the player to participate in games or training without justifiable reasons or trains the player with the reserve team or youth team without the player's consent, intentionally or otherwise;
 - ③ If the club dissolves or goes bankrupt;
 - ④ If the club withdraws or is expelled from the Association;
 - ⑤ In any other instances where the Club has materially breached this Contract and the continuation of the Contract becomes impossible.
3. The Club may immediately terminate this Contract in the following cases:
 - ① If the player unjustifiably violates the general regulations set by the association or this contract.
 - ② If the player engages in actions that are contrary to the club's interests, such as match-fixing.
 - ③ If, due to reasons other than accidental injury, illness, etc., the player is unable to participate in player activities for more than 60 days.
 - ④ If significant physical or mental deficiencies are discovered that could adversely affect the player's athletic activities.
 - ⑤ If the player continuously refuses, without justifiable reasons, to participate in official training and matches.
 - ⑥ Any other instances where the Player significantly violates this contract, making its continuation impossible.
4. In the event of contract termination, the club will pay the salary and allowances based on whether the termination is attributable to either party, and this will be determined through mutual agreement.
5. In the event of the termination of this Contract according to this Article, the Player may freely enter into a Contract with another Club.

ARTICLE 15 SANCTIONS

1. Sanctions against the player are based on the internal regulations of the club, as known to the player.
2. If sanctions are imposed on the player through the association's disciplinary measures, and the imposed fines are not paid within the specified period, the club, upon the association's request, may offset the fines from the player's salary.

ARTICLE 16 TRANSFER AND LOAN OF PLAYER

1. The Club may,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Player, transfer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is Contract to another club by entering into a transfer agreement with the transferee club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contract period. However, the contract period and annual salary (including allowances) after the transfer may be determined differently from this Contract through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transferee club and the Player.
2. The Club may,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Player, loan the Player to another club during the contract period.
3. The handling and distribution of any transfer fee arising from a transfer agreement shall be as follows:
 - ① In principle, the transfer fee shall constitute income of the Club. The Club shall, however, pay ___% of the total transfer fee received to the Player as a transfer incentive, unless otherwise agreed separately between the Club and the Player, in which case no incentive payment shall be required.
 - ② The Club shall pay the amount set forth in sub-paragraph (i) to the Player within fifteen (15)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full transfer fee is received from the transferring club.
 - ③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nd Paragraph 3, sub-paragraph (i) and (ii), if a third club offers a transfer fee of KRW _____ or more, the Club shall not refuse the Player's transfer request and shall promptly proceed with the transfer. In such case, the Player may agree separately with the Club to waive any right to a share of the transfer fee.
 - ④ The Player shall not, under any circumstances, pay any part of fee set forth in sub-paragraph (iii) in any form.

ARTICLE 17 CONTRACT PERIOD

1. The period of contract can be renewed by an agreement between the club and the player.
2. The club may renew the contract during or after the expiry of the contract by mutual agreement.

ARTICLE 18 DISPUTE RESOLUTION

1. In the event of a dispute between the Club and the Player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r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the following steps may be taken for resolution:
 - ① Consultation between the club and the player.
 - ② If the dispute is not resolved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when either the club or the player requested written agreement, the matter can be submitted to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ssociation Football (FIFA) for dispute resolution.
 - ③ If there is a disagreement with FIFA's decision, an appeal can be made to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ARTICLE 19 VALIDITY AND AMENDMENTS OF THE CONTRACT

1. This Contract is effective from the date of execution.
2. The contract can only be amended by a mutually signed or stamped document between the club and the player, and verbal modifications to the contract are not recognized.
3. In the event of force majeure, war, riots, infectious diseases, or other unavoidable circumstances preventing either party from fulfilling obligations under this contract or causing unavoidable delays, the contract terms may be modified by mutual agreement.
4. The Parties cannot enter into a sub-agreement that contradicts the terms of this contract.
5. In the case of a contract modification, the revised contract must be submitted to the association within 7 day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modification.

ARTICLE 20 MISCELLANEOUS

1. This contract shall be interpreted and govern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foreign players, the contract will be drafted in both English and Korean, and in case of conflict or inconsistency in the interpretation, the Korean version shall prevail.
2. Matters not specified in this contract and matter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this contract shall be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with good faith,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customary practices in the sports industry of South Korea, and general trade practices.

ARTICLE 21 STORAGE

In order to prove the execution and provisions of this Contract, two (2) copies of the Contract shall be prepared, and each Party shall retain one (1) copy after the Player and the Club have signed the Contract.

The Date of Agreement : (MM) _____ , (DD) _____ , (YYYY) _____

The Place of Agreement :

Signature/Seal :

The Club and the Player shall confirm and agree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General Provisions” and “Details” specified in this Contract, and the Parties hereto sign or seal as follows:

1. The Club Executing this Contract

- ① Name of the Club : _____
- ② Name of Representative : _____ (Sign)
- ③ Corporate Registration Number : _____
- ④ Address of the Club : _____

2. The Player Executing this Contract

- ① Name of Player : _____ (Sign)
- ② Date of Birth : _____
- ③ Country of Citizenship : _____
- ④ Residential Address : _____
- ⑤ Passport Number : _____
- ⑥ Previous Club (Country) : _____
- ※ In case the Player is a minor (under 19-year-old)
- ⑦ Signature of Legal Representative : _____ (Sign)

3. The Player’s FIFA Licensed Football Agent (“Agent”)

- ① Name of Agent : _____ (Sign)
- ② Date of Birth : _____
- ③ FIFA License ID of Agent _____
- ④ Country of Citizenship of Agent : _____

* The Agent shall be licensed by FIFA prior to the date of execution of this Contract, and the status and rights of any contract which has not been executed by the Player or a FIFA licensed Football Agent shall not be legally recognized.

※ If no Agent service is used:

It shall be confirmed that this Contract has not been executed by an Agent pursuant to “FIFA Football Agent Regulations”

Club’s Official Signature _____ The Player's Official Signature _____